

碩士學位論文

신용카드 犯罪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秀 吉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高 聖 官

신용카드 犯罪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秀 吉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日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高聖官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確認함

2003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目 次

第1章 序論	1
第1節 研究의 目的	1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2
第2章 信用卡에 관한 理論的 考察	4
第1節 信用卡의 意義 및 種類	4
1. 信用卡의 概念	4
2. 區別概念	5
3. 信用卡의 種類	7
第2節 信用卡의 發展過程	10
1. 外國의 信用卡	10
2. 우리나라의 信用卡	12
第3章 信用卡犯罪의 意義 · 特徵 · 類型	15
第1節 信用卡犯罪의 意義	15
1. 信用卡犯罪의 概念	15
2. 信用卡犯罪의 保護法益	16
第2節 信用卡犯罪의 原因과 特徵 · 類型	19
1. 信用卡犯罪의 原因	19
2. 信用卡犯罪의 特徵	21
3. 信用卡犯罪의 類型	24
第4章 信用卡의 不正取得 · 使用에 관한 刑事法的 考察	27
第1節 自己名義 信用卡의 不正取得, 使用	27
1. 自己名義 信用卡의 不正取得	27

2. 自己名義 信用卡의 不正使用	31
3. 罪數關係	52
第2節 他人名義 信用卡의 不正取得·使用	52
1. 序	52
2. 他人名義 信用卡의 不正取得	53
3. 他人名義 信用卡의 不正使用	59
4. 罪數關係	79
第5章 信用卡犯罪에 대한 立法論	82
第1節 處罰規定의 新設 내지 補完	83
1. 信用卡 僞·變造罪의 整備	83
2. 信用卡不正使用罪의 客體의 整備	84
3. 其他	86
第2節 法定刑의 再整備	87
1. 信用卡 僞·變造行爲	87
2. 詐欺罪와 信用卡 不正使用罪	88
3. 虛僞賣出傳票 作成과 私文書僞造罪	88
第6章 結論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9

第 1 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21세기 현대사회의 경제생활에 있어 시작과 끝은 모두 신용카드(Credit Card)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카드는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금, 수표에 이은 거래수단으로서 “제3의 화폐”라 불리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信用”이 가장 중심이 되는 “信用社會”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늘날 거래방법의 다양화와 함께 신용거래의 한 수단으로 등장한 신용카드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로 널리 보급되어 소비자 신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信用社會의 주역이 되고 있다. 소위 캐시리스(Cashless)라 할 정도로 신용카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통신판매나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신용카드의 이용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신용카드는 곧 현금이라는 인식을 할 정도로 경제생활에 있어 필수적이 되었고, 정부 또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세금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의 기능에 힘입은 카드의 보급 확대에 대응하여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종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4년 이후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매년 12~27.8%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인 만큼 분실·도난의 위험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용카드의 거래구조를 알고 이를 악용하려는 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신용카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2003년 10월말 현재 2,283,319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 가운데 63.5%에 이르고 있다.¹⁾

신용카드범죄의 특징은 기능화, 전문화, 조직화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

1) 한국경제신문, 2003. 11. 27. 제1면 및 금융·경제 해설 A3면 참조.

응도 점점 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들을 규제하기 위해 1987년 5월 30일 법률 제3928호로 제정·공포된 신용카드업법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0호로 1차,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699호로 다시 2차 개정·보완하여 시행을 하였으나 실제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폐지되고,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74호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최근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1999년 5월 24일 법률 5982호로 개정, 2001년 3월 28일 법률 6430호 다시 벌칙규정 등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몇 가지 구성요건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그 외의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에 따라야 하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다양한 양상의 신용카드 범죄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법원의 견해를 대체로 표명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뒤늦게나마 신용카드범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컴퓨터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 불법사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학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진행방향을 검토·분석하여 신용카드범죄를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모든 신용카드범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범죄 중 가장 심각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중심으로 그 처벌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 이와 관련된 학설 및 판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논문은 신용카드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부정취득과 부정사용행위가 형법 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모두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신용카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신용카드의 의미를 살펴보고, 연혁과 기능 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주요테마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함하는 전체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살펴본다. 먼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신용카드범죄의 개념(좁은 의미의 신용카드범죄와 넓은 의미의 신용카드범죄)에 대해 살펴보고, 그 보호법익을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위에서 취한 분류와 방법을 토대로 가장 범죄율이 높고 문제시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부정사용행위에 관해서는 형법상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특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범죄들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있어 거래현실을 규제하기에 여전히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법제도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제6장에서 앞에서 다룬 논제들을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이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신용카드범죄에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단행본, 논문, 판례 및 자료 등의 내용을 분석·정리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였고 국내외의 판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고 신용카드범죄의 수법과 동향의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되기 위하여 통계자료, 국내 언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第 2 章 信用卡에 관한 理論的 考察

第1節 信用卡의 意義 및 種類

1. 信用卡의 概念

신용카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Credit Card를 신용카드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 보면 신용카드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지정된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 등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를 ‘신용공여기간’이라 한다)동안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신용카드회사나 제3자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행회사가 발급한 증표”²⁾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 CCPA) 제1편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 TILA) 제103조 (k)항에 의하면 “신용카드란 현금, 재산, 노동이나 서비스를 신용으로 얻기 위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되는 카드(card), 판(plate), 쿠폰책(coupon book)이나 다른 신용의 도구”³⁾라고 하고 있다. 주법인 통일소비자신용법(Uniform Consumer Credit Code) 제1편 제301조 17호는 “신용카드란 카드발행인이 카드소지자에게 그가 상품·용역을 구입, 임대 또는 대출을 받거나 기타 필요한 일에 있어서 카드발행인 또는 제3자로부터 신용을 받을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약정 하에 발행된 카드 또는 도구를 의미한다”⁴⁾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많은 주법에서도 신용카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최응렬, “신용카드위조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1999. 10., 157면.

3) 김영대,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검찰 제107호, 1996. 6., 246면.

4) 박주환, “신용카드 범죄의 실태와 형사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1면 ; 인익수, “신용카드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4면 ; 최광혁,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5면.

일본은 할부판매법 제2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란 그것을 제시하여 특정의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도구이며 금전대출의 신용제공도 받을 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입법적 정의는 없고 독일형법 제248조 a의 사기죄(Betrug)로 규율하였지만 이론상으로 1986년 5월 15일 제2차 경제범죄방지법(Zweites Gesetz zur Bekämpfung der Wirtschafts -kriminalität)에 의하여 신설된 신용카드남용죄 (§266b)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법266조 b에 신용카드와 수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독립된 규정이 도입되어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용카드란 발행인에 의한 보증의사표시를 근거로 발행인으로 하여금 가맹점에 지불하게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권한을 카드의 교부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⁵⁾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란 신용을 매개체로 하여 신용카드회원의 가입신청에 따라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회원은 그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지불하는 수단으로 현금, 수표에 이은 “제3의 통화”라고 할 수 있다. 물품제공의 기능만 가진 외상카드(Charge Card)에 신용제공기능까지 가진 카드를 진정한 의미의 신용카드(Credit Card)라고 할 수 있다.

2. 區別概念(與信專門金融業法에 따른 種類)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법상의 별칙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현금인출의 기능만을 가지고

5)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연구 제22호, 1995. 7., 111-112면 ; 인익수, 앞의 논문, 5면 ; 최광혁, 앞의 논문, 5면.

있는 현금카드(Cash Card, CD카드)는 위 신용카드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벌칙규정이 함께 적용되기는 하나 신용카드와는 구별되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직불카드(Debit Card)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與信專門金融業法 제2조 제2호). 이는 현금카드와 비슷하면서도 구별되는 것으로 직불카드의 소지인은 판매대금자동결제(Point of Sale, POS)기기에 직불카드를 집어넣어 거래은행의 자기계좌에서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EFT)를 통해 백화점의 계좌로 현금이체를 시킬 수 있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이도 카드만으로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일정 기간 외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회원에 대한 신용의 공여를 그 본질로 하는데 반하여, 직불카드는 예금잔고 내에서 현금결제와 같이 판매와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및 판매점과의 전산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⁶⁾ 또한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에 준하여 법적 규제를 받는다.⁷⁾

2) 선불카드(Prepaid Card, PP카드)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한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동법 제2조 제8호). 이러한 선

6) 인익수, 앞의 논문, 14면 ; 조성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1, 6면 ; 최광혁, 앞의 논문, 7면.

7) 임용, "형법각론", 법문사, 2003, 369면.

불카드는 카드소지인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금을 선급하고 구매는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 밖에도 양도가 가능하고 대금결제가 신속·간단하다는 점 및 카드 소지인의 신용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신용카드와 구별된다.

이러한 선불카드는 미국, 일본 등의 카드 선진국에서는 이미 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고 앞으로 백화점뿐만 아니라 서점, 약국, 식당, 제과점, 슈퍼마켓, 주유소 및 택시, 지하철, 버스 등 소액의 현금거래가 빈번히 예상되는 곳에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3. 信用卡의 種類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는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⁸⁾ 이러한 신용카드의 분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去來當事者의 數를 기준으로 한 것과 代金支給方法에 따른 분류에 따라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여러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수에 따른 분류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거래당사자의 수에 따른 분류

(1) 양당사자카드(Two-Party Card 또는 Dual-Party Card)

양당사자카드는 카드발행인(card-issuer)과 카드회원(cardholder)의 두 당사자만 존재하고, 이 두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법률관계만 성립하는 카드로서 하우스카드(House Card)라고도 한다. 백화점, 주유소, 호텔 등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가 이에 해당한다.⁹⁾

양당사자카드는 카드 발행인이 자기의 판매장에서 또는 자기의 생산품목만을 대상으로 외상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매출의 확대를 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호, 1994. 8., 260-261면.

9) 신승용, "신용카드에 관한 법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21면.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카드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보통의 외상거래와 그 법률 관계가 하등 다를 바 없다.¹⁰⁾ 즉 카드이용대금의 결제관계에 관한 복잡한 법이론 구성이 불필요하고, 그 법률관계는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규제하면 족하다.

(2) 삼당사자카드(Three Party Card ; Dreiparteiensystem)

삼당사자카드란 신용카드거래의 당사자로서,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신용카드회원 이외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존재하는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삼당사자신용카드는 삼면적이므로 신용카드 특유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한다.¹¹⁾

현재 국내의 은행계 신용카드와 카드전문회사의 신용카드가 이에 해당하며, 전형적인 신용카드 형태이다.

(3) 다당사자카드(Multi-Party Card)

다당사자카드란 다수의 은행이 참가하여 카드발행회사를 설립하고 이 발행회사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행되어 공동의 가맹점에 카드가 사용되지만, 개개의 참가은행이 독자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각 은행의 자금부담 하에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의 신용카드를 말한다.¹²⁾ 이를 은행카드(Bank Card)라고도 한다.¹³⁾

다당사자신용카드도 카드발행회사, 카드 회원, 가맹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삼당사자신용카드와 다를 바 없으나, 발행회사가 단일의 기업이 아니고 복수의 기업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 산업이 초창기에 미국의 은행들이 일정 주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했던 제약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카드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에 있는 은행들을 카드발행에 참여시킬 필요에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카드로는 국제적인 카드인 Diner's Club-Card, Master Card 등이 있으며, 국내의 카드 중에는 BC카드와 한국외환은

10) 이부훈, "신용카드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1995, 22-23면.

11) 김경태, "신용카드거래의 법리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8, 13면.

12) 최광혁, 앞의 논문, 16면.

13) 문남주, "신용카드범죄의 형사적 제재와 대책",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9, 8면 ; 정동윤, "신용카드에 관한 법률문제", 대한변호사협회지 1987. 3, 54면.

행이 발행하는 VISA카드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들 카드와 공동으로 카드발행과 대금청구를 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업무영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¹⁴⁾

(4) 혼합체계방식카드

양당사자체계카드와 삼당사자카드체계의 혼합형태의 카드의 형태이다. 이 카드의 예로 항공카드(Air Travel Card)를 들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항공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자기 항공사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도, 다른 항공사에서 발급된 항공카드로 자기회사의 서비스를 결제를 허용하는 체계이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카드를 발행하면서도 다른 회사의 가맹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¹⁵⁾

2) 카드이용대금의 지불방식에 따른 분류

(1) 일시불카드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일정한 결제일에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신용카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은행계 카드와 백화점 카드를 말한다.

(2) 분할불카드(균등분할불, 주기분할불)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균등 또는 주기별로 기간을 정하여 결제대금을 분납하는 형태의 카드를 말한다.

(3) 회전식 카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별로 일정한 신용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정된 결제일에 상환하며 한도액 내에서는 카드이용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14) 이민규, 앞의 논문, 30-31면.

15) 오경식,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30면.

3)기타의 분류

①카드의 용도·목적에 따라 물품판매용카드·금전대부용카드·기타 서비스(숙박·운송 등)제공카드, ②카드 등급에 따라 일반카드·특별카드, ③카드발행회사에 따라 은행계카드·전문계카드·백화점계카드·판매점계카드, ④결제(지불)방식에 따라 신용카드(Credit Card)·직불카드(Debit Card)·선불카드(Prepaid Card), ⑤카드의 사용 지역에 따라 국내카드·국제카드, ⑥이용목적의 제한여부에 따라 백화점 신용카드와 같이 그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단일목적카드 내지 제한목적카드(Limited Purpose Credit Card)로 분류할 수 있다.

第2節 信用卡의 發展過程

1. 外國의 信用卡



신용카드는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된 제도로서 신용카드의 효시는 1894년 Hotel Credit Letter Company가 개발한 카드형태의 여행자 신용장이 신용카드의 선구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14년에 지금의 Mobil Oil의 전신인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 of California 등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자사의 주유소나 연쇄점에서 고객들이 가솔린, 오일, 기타 부속물들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후불정기결제를 할 수 있는 증표로서 명함크기의 딱딱한 종이에 소비자 이름, 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우대카드(Courtesy Card)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다.¹⁶⁾ 뒤이어 백화점, 호텔, 여행사, 전화회사, 철도회사 등이 독자의 신용카드발행을 시작하였고 이로써 미국 내의 거의 전 업종에 파급되었다.

그 후 신용카드산업은 1951년의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51년 카드전문회사인 Diners Club이 설립되어 독자적인 카드를 발

16) 김영대,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검찰 제107호, 1996. 6, 244면.

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발전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Diners Card가 출현한 후 8년 뒤에는 여행자수표발행회사였던 American Express Company가 1958년 10월 카드업에 뛰어들어 American Express Card를 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1959년 초에는 Hilton Credit Company에 의하여 Carte Blanche Card가 발행됨으로써, T and E (Travel Entertainment card)의 3대 카드가 등장하게 되었다.¹⁷⁾

은행에 의한 신용카드의 보급이 늘어나고 미국 전역에 걸쳐 조직망이 형성되자 은행들은 무대를 확대하여 유럽으로 진출하였으며, National Bank Americard는 1977년에 VISA Card로, Master Charge Card는 1979년 Master Card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한편, 2002년 말 현재 세계 신용카드 규모는 Visa, Master, American Express의 이용대금을 기준으로 볼 때 3조 9,289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미국 내에서 사용된 금액은 1조 3,736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35%를 차지할 정도로 카드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미국 카드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소매금융업의 특성상 경기변동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변동성이 크지만 카드산업의 종주국답게 1987년~2002년 동안 연간 누적 성장률 1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 6월말 현재 FRB의 보고에 따르면 1950년 본격적인 카드산업이 출현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6,000개를 넘어섰고, 카드발급 대행기관까지 합치면 10,00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6,000개의 기관은 주로 은행과 신용조합(Credit Un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MBNA 등 전 업계 카드사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신용카드 산업의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Visa와 Master Card로 대표되는 은행계 브랜드 발급사가 78%로 가장 높고, 여행 및 오락에 특화된 American Express Card가 16%, 소매점계 카드로 성장한 Discover Card가 6%를 차지하고 있다¹⁸⁾.

유럽에서는 1950년대 말 미국에서 들어온 신용카드가 발행되기 시작했으나 오랜 역사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유로카드(Euro Card)와 유로체크(Euro Check) 등이

17) 박창식,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6, 8면.

18)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소식", 제32호, 2003. 6. 30., 25면(출처 : 한원종,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734호)

있어 크게 보급되지 못하고 유로카드나 유로체크 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 신용카드거래가 활발한 편이다.¹⁹⁾

일본의 경우 1951년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최초로 도입된 후 1960년 미국의 Diner's International과 일본의 교통공사, 후지(富士)은행 등이 공동 출자하여 일본 다이너스클럽카드를 설립하면서 신용카드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는 三和銀行이 주축이 되어 6개 은행이 공동 설립한 Japan Credit Bureau(J. C. B)에서 JCB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은행계의 카드산업진출이 본격화되었다.²⁰⁾ 그 후 도시은행들이 카드산업에 잇달아 진출하여 1967년에 미쓰비시(三陸)은행계의 다이아몬드카드(D.C.)와 스미토모(住友)은행계의 시미토모카드가 발급되었고, 1969년에는 토카이(東海)은행계의 밀리언카드(M.C.)와 5개 도시은행이 연합한 유니언카드(U.C.)가 보급되었다.

2.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우리나라의 경우 선불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1969년 신세계백화점이 자사의 증역을 대상으로 하여 통장식의 신용거래를 하다가 후에 전 사원으로 확대하여 카드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양당사자카드로서 자사의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이것이 신용카드판매의 시초라고 한다.

본격적인 신용카드전문회사의 설립은 1978년 Korean Express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등장하였으며, 한국 신용카드사가 설립되어 “Korea Card(KOCA카드)”를 발행하였고 같은 해 한국외환은행에서는 해외여행자와 외국인 대상의 국제카드인 “비자카드”를 도입하여 발행하였다.²¹⁾

이후 1979년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KC 카드, 1980년에는 국민카드가 발행되었으며, 1982년에는 5개의 시중은행(한일, 조흥, 한국산업, 제일, 서울신탁은행)을 중심

19) 김영대, 앞의 논문, 245면.

20) 이민규,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부담귀속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9, 22면.

21) 김지혜,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11면.

으로 BC카드가 발급되었다. 이어 1985년 국내 지방은행들이 비자카드를 공동으로 발행하였으며, 1987년에는 신용카드업법이 법률 제3928호로 제정되었다. 1988년에는 LG, 삼성, 장은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1992년에는 신용카드약관이 개정되었다.

그 후 1997년 법률 제5374호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 1월 13일 법률 제5505호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74호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고 최근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2호로 개정하였고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30호 다시 별칙규정 등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한편 IMF경제체제 이후 부실카드를 정리한 후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주요 실적은 2000년 이후부터 카드발급자수가 매년 약50%정도씩 증가하여 2002년 6월말 현재 카드발급자수 총103,685,000매이고 이용금액은 매년 약100%정도씩 증가하여 금 3,044,031,000원으로 나타났다.²²⁾



[표 I] 신용카드의 주요 실적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단위 : 천매, 천점, 억원, %)

구 분	카드 발급수	증가율	가맹점수	이용금액	증가율
1996	41,113	23.5	3,461	630,328	22.2
1997	45,703	11.1	4,257	721,153	14.4
1998	42,017	-8.1	4,649	635,567	-11.9
1999	38,993	-7.2	6,192	907,825	42.8
2000	57,881	48.4	8,611	2,249,081	147.7
2001	89,330	54.3	12,627	4,433,675	97.1
2002.06	103,685	44.2	14,298	3,044,031	61.9

주) 1. 이용금액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2. 1998년~1999년 카드 발급 수 감소 : IMF경제체제 이후 부실회원정리

3. 2002년 6월 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2)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신용카드업계현황, 2002. 9.,

또한 은행연합회에 의하면 2003년10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우리나라 총인구 4,613만여 명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3,596,168명으로 경제활동인구(약2,320만 명)가운데서는 15.5%에 해당한다. 이는 100명당 15.5명이 신용불량자이고 그중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63.5%에 해당한다고 한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전체 신용불량자 가운데 20대 이하가 19.7%에 이르며 최근에는 30대 중 여성이 4.46%증가하고 남성은 2.55%의 증가하여 30대 여성신용불량자가 증가추세에 있다.²³⁾ 이와 관련하여 경제불황, 마구잡이식 카드발급, 신용불량등록제도의 부적절성 및 불완전한 신용정보 제공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로 인한 신용카드범죄의 발생가능성도 훨씬 많다고 할 것이다.



23) 한국경제신문, 2003. 11. 27., 금융·경제 해설 A3면 참조.

第 3 章 信用卡犯罪의 意義 · 特徵 · 類型

第1節 信用卡犯罪의 意義

1. 信用卡犯罪의 概念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신종범죄로 일컬어지는 신용카드범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용카드범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범죄는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위조·변조·절취 등 부정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그리고 매출전표를 위조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²⁴⁾

학자에 따라 신용카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신용카드범죄를 “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동 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회원은 카드회사에 대금지불의무가 있는데 동 과정과 관련하는 부정행위”²⁵⁾로 한정적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신용카드범죄를 부정사용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신용카드라는 새로운 거래수단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범죄유형인 신용카드가 행위의 수단 혹은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²⁶⁾,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²⁷⁾,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제도를 이용하여 범하는 주로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범죄”²⁸⁾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기도 한다.

일본경찰백서에 따르면 카드범죄라고 하는 것은 현금카드, 신용카드와 사라(サウ)

24) 강동범, 앞의 논문, 116면.

25) 장영민,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51면.

26)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제도적 대책”, 논문집 제30호, 서울시립대학교, 1996, 11면.

27) 오경식, 앞의 책, 23면.

28) 김형렬,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25면.

금카드²⁹⁾의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로 컴퓨터범죄 이외의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³⁰⁾ 독일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범죄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신용카드부정사용이라고 한다.³¹⁾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일반형법에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으며, 개별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서도 신용카드에 관한 몇 개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신용카드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볼 때 좁은 의미의 신용카드범죄개념이 신용카드범죄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신용카드범죄를 고찰하는 이유가 신용카드산업체계의 보호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물론 신용카드의 截取·偽造 등 不正取得, 賣出傳票 偽造·變造, 통신판매를 이용한 사기행위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를 신용카드범죄로 파악하는 넓은 의미의 신용카드범죄개념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信用卡 犯罪의 保護法益

신용카드범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신용카드범죄를 넓은 의미로 파악할 때 신용카드범죄 개념에 포섭되는 신용카드의 위조·절취나 매출전표의 위조 등은 기존의 범죄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신용카드가 범죄행위의 수단 내지 대상이 된다는 점만 다를 뿐이므로 독자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이들의 보호법익은 기존 범죄의 보호법익과 동일하다.³²⁾

이에 반하여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같이 신용카드의 출현에 의하여 새로이 등장한 신용카드범죄 즉, 좁은 의미의 신용카드범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29) 최응렬, “신용카드위조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159면 ; サラリーマン(salaried man)금융의 준말로 공급생활자 등을 상대로 금전 대출을 위하여 고안된 신용카드의 일종이다.

30) 최응렬, “신용카드위조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159면.

31) 오경식, “한국과 독일의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형사정책 제8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8, 130면.

32)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제도적 대책”, 논문집 제30호, 서울시립대학교, 11-12면.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호법익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며 이는 곧바로 다른 범죄와의 관계, 즉 죄수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1986년 8월1일에 제2차 경제범죄대책법에 의하여 신설된 독일 형법 제266조의 b의 수표카드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³³⁾와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다. 먼저 1차적으로는 신용카드 발행회사의 재산보호이며 2차적으로 개인을 초월한 신용 경제적 측면에서 현금 아닌 지불수단의 여러 가지 형태의 작용 능력의 보호라는 견해(사회적 법익측면 강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보호법익을 단순한 개인재산의 보호로 보고 현금 아닌 지불수단의 보호는 단순히 반사적으로 보호될 뿐이라는 견해(개인적 법익만을 주장)가 있다.³⁴⁾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몇몇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보호법익을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³⁵⁾ 이 견해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당초 기업이 이윤추구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개인 사이의 거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의 경제현실에서는 하나의 경제제도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오늘 날 신용카드는 “第3의 貨幣” 또는 “플라스틱貨幣” 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거래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그것의 부정사용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제도의 하나인 신용카드거래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제도 내지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카드범죄의 본질을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본다. 즉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與信專門金融業法 제1조 “...국민의 金融便宜를 도모하고 國民經濟發展에 이

33) 독일형법 제266조 b(수표 및 신용카드의 남용).

① 수표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발급에 의하여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을 남용하여 발행인으로 하여금 사용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이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8조의 a는 이를 준용한다.

34) 안익수, 앞의 논문, 37면 참조.

35)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제도적 대책”, 11-13면 참조.

바지함을 목적...”이라고 규정한 것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보호법익이 단지 카드발행자의 재산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적정한 기능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는 달리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보호법익을 카드발행자의 재산만으로 파악하고 신용거래질서는 반사적으로 보호될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³⁶⁾ 이 견해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규정된 타인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경제생활 또는 경제 질서라는 사회적(초개인적)법익을 반사적으로 보호할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정한 범죄의 보호법익은 개별적인 구성요건에서 파악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에 의해 보호법익을 확정하는 것은 구체적 보호법익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마다하고 확인하기 힘든 경제 질서 또는 경제생활의 기능이라는 경제범죄의 보호법익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의한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맹점으로 보는 입장과 신용카드회사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이는 형법 제347조에서 詐欺罪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³⁷⁾으로 각 입장에 따라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먼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자를 가맹점으로 보는 입장은 그 보호법익을 가맹점의 재물교부 그 자체를 손해로 인정하여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가맹점이 카드발행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가맹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다. 신용카드부정사용에 의한 피해자를 신용카드회사로 보는 입장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직접 불법한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고 보며 따라서 이익과 손해사이에서는 자료 동질성 또는 직접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처분행위에 의하여 손해와 이익이 발생한때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³⁸⁾.

대법원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호법익을 ‘신용카드의 건전한 유통관계’

36)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8, 668면 참조.

37) 우리형법에서는 독일형법 제263조와 달리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38) 윤해성,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1, 18-19면 ; 인익수, 앞의 논문, 35-36면 ; 한상근,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1998, 32-33면.

라 하여 경제범죄의 하나로 보며,³⁹⁾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신뢰로 파악하여⁴⁰⁾ 사회적 법익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第2節 信用卡犯罪의 原因과 特徵, 類型

1. 信用卡犯罪의 原因

신용카드범죄가 생겨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카드의 대중화로 인해 이용자층이 확대되어 최근에는 신용을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회원으로 가입되고 있다. 이렇게 카드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회원자격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저하되고 심사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 현실은 카드거래에 대한 일반의 지명도가 높아진 계기가 된 동시에 이를 통한 범죄의 증가에 대해서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⁴¹⁾

또한 카드회원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모집요건, 자격심사 등의 미흡으로 불량가맹점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유평가맹점 혹은 가공의 가맹점이 속출하여 범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⁴²⁾

신용불량자의 수준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신용카드사의 신용불량자는 2001년 말 72만 명이던 것이 2002년말 에는 113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금년 들어서도 계속 이어져 2월말에는 128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금융권 전체 신용불량자 중에서 신용카드사의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말 29.4%에서 2002년 말 43%까지 급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유율의 증가추세는 금년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여 2003년 2월말에는 45.4%까지 증가하였다. 여기에 곁영은

39) 대판 1995. 7. 28., 95도997.

40) 대판 1996. 7. 12., 96도2715.

41) 안권섭, 앞의 논문, 22면.

42) 소재룡, “크레디트카드범죄와 형사법”,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4, 56면.

행의 신용카드 신용불량고객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을 카드고객이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⁴³⁾

이러한 카드 연체율의 증가와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곧바로 카드사의 수지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사 전체 당기순이익은 2001년 말 2조 4천억 원이던 것이 2002년 말에는 3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2년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해도 1조 1천억 원의 순이익을 보였으나 하반기에 8천억 원의 적자를 나타내며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순익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져 2003년 1월에는 4천억 원대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신용카드범죄의 가장 큰 발생원인으로는 신용카드거래조직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을 기초로 하는 신용사회에서는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물건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지만, 이 거래시스템에 관하여는 각 주체들에 의해 신용이 깨뜨려질 경우 도리어 유용한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즉 ①紛失·盜難 등에 있어서 무자격자가 카드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②현금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연속적인 계산기능이 자연히 갖추어져 있어서 소비자가 과중한 채무에 빠지는 것이 방지되고 있음에 대하여 카드로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불연속적인 계산기능 조차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중채무에 빠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점, ③카드자체의 偽造·變造를 완전하게 방지할 수 없다는 점, ④전국적인 개인별 신용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였고 신용카드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신용정보제공도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⁴⁴⁾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조사에서 미서명카드의 이용경험자가 조사자의 31.4%에 해당하였다. 또한 카드양도 및 대여경험이 있는 경우도 2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점에서 본인확인절차를 하는 경우는 11.8%에 불과하여 서명확인 및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43)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금융소식 제31호, 2003. 5. 31., 18-19면.

44) 최병록, "신용카드범죄의 형사규제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 제6호, 1995. 3., 14면 참조.

45)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금융소식 제34호,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8. 31.

따라서 카드 발급 시 信用調査 및 資格審査의 強化, 加盟店에 대한 審査 등 관리 철저와 함께 카드회사 상호간의 전국적인 신용정보 교환체계의 구축, 카드의 중요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범죄 등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예방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단순히 범죄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카드거래의 구조적 부정이용을 막을 수 없다고 하겠다.⁴⁶⁾

2. 信用카드犯罪의 特徵

신용카드범죄는 신용카드 시스템을 악용하는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서 범행 순간 다른 범행처럼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협수단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개 아마추어들에 의해 신속하게 저질러질 개연성이 높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다른 범죄에 비해 많으며,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범죄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犯行의 迅速·集中性

현재의 모든 신용카드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모든 승인과정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접수되면 더 이상의 부정사용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절취, 습득, 위조 등으로 타인의 카드를 영득한 제3자가 부정사용 하는 경우에는 보통 도난, 분실 당한 카드회원이 카드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가맹점에 통지될 때까지 최단기간에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각 가맹점간의 정보체계가 전산화되어 카드사용이 정지될 때까지 더 짧은 시간에 범행을 집중·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⁴⁷⁾

46) 인익수, 앞의 논문, 47면.

47) 김종길,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성격, 유형 및 대응방안", 「석사 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1998, 42면 ; 안권섭, 앞의 논문, 23면 ; 인익수, 위의 논문, 38면.

2) 犯行의 廣域性과 國際化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용카드범죄의 경향을 보면 범행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정지역에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사고의 통지가 신속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발각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범행의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외국의 카드회사들과 제휴되어 외국에서의 사용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신용카드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되고 있는데 국내 원화현금서비스 한도가 소진된 회원의 신용카드를 수집한 뒤 외국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외국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위·변조하여 국내에서 부정사용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⁴⁸⁾. 이렇게 광역화되고 국제화되는 신용카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전산망 등의 대응체제가 시급히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3) 犯行의 計劃性과 知能化

신용카드범죄는 신용카드의 전문적인 지식을 악용하여 범해지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서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매우 독특한 거래체계를 갖고 있어 범죄를 위해서는 거래구조 및 전문지식과 관련정보의 습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듯 최근에는 신용카드회사의 내부자와 공모하여 회원정보를 입수하고, 신용카드 제작기기까지 동원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과거의 범죄가 허위매출전표작성 등의 원시적 수준이었다면 수법자체가 신용카드자체의 위·변조 등으로 첨단화되고 있다. 또한 1997년 이후에는 M/S(회원정보 자료가 수록된 자기띠) 위조가 일반화되고, 회원정보 복제수법이 더욱 교묘하여 정상 가맹점에 위조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⁴⁹⁾

48) 국가안전기획부 국제범죄정보센터, “신용카드범죄, 어디까지 왔나-첨단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신용카드범죄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본다”, SECURITY WORLD 제24호, 1999. 1, 81면.

4) 犯行의 組織性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자 범죄조직에 의한 신용카드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분실이나 도난 또는 우송 중 망실된 카드의 부정사용은 대부분 한 사람에게 의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위·변조, 불법현금대출 등은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⁵⁰⁾ 특히 신용카드의 위조의 경우에는 고도의 컴퓨터조작능력과 모조기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전문가, 카드위조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하는 자, 수집된 재료로 카드를 위조하는 자, 위조된 카드와 함께 사용할 신분증을 위조하는 자,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어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불법사채업자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이들이 담보로 취한 신용카드를 입수한 후 가맹점과 공모하여 가공의 매상을 위장하고 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행도 속출하고 있다.⁵¹⁾

최근에는 신용카드범죄에서 파생되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세계적인 조직범죄집단이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시켜 신용카드의 절도, 위조, 사용, 판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내의 조직범죄집단도 이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5) 젊은 世代에 犯行의 集中

경제성장기에 교육을 받은 20·30대의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차금에 대한 저항감이 적고, 신용카드도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신용카드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의 경우 이들에 의한 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카드사 전체 신용불량자 중 20대는 27%, 30대는 33.3%를 점유하고 있어 대부분 20-30대가 신용불량자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²⁾

49) 국가안전기획부 국제범죄정보센터, 앞의 논문, 82면.

50) 강명수,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7. 25면.

51) 최병록, 앞의 논문, 15면.

52)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금융소식 제31호, 2003. 5. 31. 19면.

3. 信用卡犯罪의 類型

1) 분류의 방법

信用卡범죄를 체계적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범죄 행위자를 중심으로 분류한다면, 시간적 순서를 기준(信用卡의 유통단계를 기준)으로 또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해서 처벌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우선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타인명의 카드를 이용하는 범죄, 자기명의 카드를 이용하는 범죄, 회원명의를 묻지 않는 범죄와 위조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진정한 카드를 수단으로 하는 범죄, 부진정한 카드를 수단으로 하는 범죄 그리고 재산영득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카드 자체를 객체로 하는 범죄, 카드를 상용하는 범죄로의 분류가 그것이다.⁵³⁾

與信專門金融業法 제70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로는 ①信用卡 등을 僞造·變造하는 行爲, 僞造 또는 變造된 信用卡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紛失 또는 盜難당한 信用卡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제1항), ②무허가 信用卡업을 영위하는 행위(제2항 제1호),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信用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행위(제2항 제2호), ④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 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信用卡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유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행위(제2항 제3호), ⑤信用卡를 讓渡·讓受하거나 質權設定하는 행위(제3항 제1호), ⑥가맹점수수료를 信用卡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행위(제3항 제2호), ⑦다른 信用卡가맹점의 명의로 信用卡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거나 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제3항 제3호), ⑧信用卡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제3항 제4호), ⑨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행위(제3항 제5호), ⑩信用卡가맹점이 아닌 자가 信用卡가맹점 명의로 信用卡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53) 최병록, 앞의 논문, 15면-16면.

행사하거나 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제3항 제6호), ①신용카드 업자가 아닌 자가 그 상호 중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興信·信用卡·施設貸與·리스·割賦金融·新技術金融 등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제3항 제7호), ②신용카드 등의 僞·變造된 신용카드 등의 판매 또는 사용미수행위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는 ①신용카드 허위발급 후 부정사용, ②신용카드 등급변경 위장, ③도난 분실된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④매출전표 위·변조(위조매출전표작성·이중매출전표작성·매출전표 금액변조), ⑤신용카드 현금대출, ⑥매출전표할인 등이 있다⁵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분류 방법 중 대다수의 학자들⁵⁵⁾은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이다. 이는 다시 ①타인 또는 가공인 명의의 카드 취득, ②자기명의 카드의 취득 ③카드의 위조·변조에 의한 취득, ④신용카드 자체를 불법 영득하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는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로서, 이는 크게 ①타인명의카드의 부정사용 ②자기명의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나누어진다. 셋째는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이고, 넷째는 가맹점과 관련된 범죄이다.

2) 본 논문의 경우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취한 분류방법을 토대로 가장 범죄율이 높고 문제시되는 신용카드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를 크게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나눈다.

54)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7면.

55)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제도적 대책”, 논문집 제30호, 서울시립대학교, 9면 ; 장전배, 앞의 논문, 45면 ;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 265면.

다시 자기명의 신용카드부정사용을 ①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 ②가맹점에서 지불능력과 지불의사 없이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③지불능력과 지불의사 없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로 나누고,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①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 ②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카드의 부정사용, ③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이외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나눈다. 다시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카드의 부정사용은 가맹점에서의 물품구입행위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로 나누기로 한다.



第 4 章 신용카드의 不正取得·使用에 관한 刑事法的 考察

第1節 自己名義 신용카드의 不正取得, 使用

1. 自己名義 신용카드의 不正取得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의 경우란 신용카드 발급신청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신용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카드업자를 속이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또는 기존회원이 허위의 도난, 분실신고 등을 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속이고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⁵⁶⁾

이처럼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취득 하는 경우에 과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어떤 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⁵⁷⁾와 카드의 취득 자체만으로는 재산상의 손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견해⁵⁸⁾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와 재물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과연 카드취득행위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56) 인익수, 앞의 논문, 52면~ 53면.

57) 강동범,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5), 1997, 365면 ; 김영환, “현금자동직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형사판례연구(6), 1998, 260면 ; 배중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443면 ; 손동권, “신용(현금)카드 부정사용의 유형별 범죄성립과 죄수”, 형사판례연구(7), 1999, 347면 ; 장영민,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 83-84면 ; 한상문, 앞의 책, 325면.

58) 오경식, 앞의 책, 72면 ; 이상돈, 앞의 논문, 111-112면 ; 허일태, “결제능력 없이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저스티스 제29권 제2호, 1996. 9., 118면.

1) 詐欺罪의 成立與否

대금지불의 능력과 의사 없이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행위 그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먼저 문제가 되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財物性 認定與否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경제적 금전적 교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 가치가 있어도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므로 신용카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에 있어 사기죄 성립유무의 핵심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가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독일 형법 제 263조와는 달리 재산상의 손해를 요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요건으로 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다수의 견해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손해와 행위자의 이익은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결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는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를 요한다고 한다.⁵⁹⁾

대법원은 종래부터 일관되게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⁶⁰⁾

(1) 詐欺罪 肯定說

신용카드는 객관적 교환가치는 적지만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며,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것은 일정한 신용을 공여 받아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거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이므로 카드발급에 부수 하는 재산적 가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은 카드라는 재물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동시에 카드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59) 박상기, 앞의 책, 323면 ; 배종대, “형법각론”, 434면 ; 이재상, 앞의 책, 294면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357면.

60) 대판 1992. 9. 14, 91도2994 ; 대판 1997. 9. 9., 96도1561.

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詐欺罪 否定說

사기죄를 부정하는 견해는 신용카드는 객관적 가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의 발행 후 해당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없이 발행자의 비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의도된 거래가 아직 행하여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발행자의 재산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또한 신용카드 취득 그 자체가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라고 할 수 있는 가 또는 신용카드회사는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① 먼저 신용카드 발행회사는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해당 신용카드에 의해 상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카드에는 카드회사의 권리가 아니라 회원 자신의 재산권의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② 이러한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권한관계로 인하여 신용카드 소지자가 구체적으로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하기 전에는 카드발행회사의 전체 재산에는 아직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체적 위험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관점을 좁혀 신용카드 자체의 재물성을 보더라도 당해 신용카드 자체의 물질적 가치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 위험의 단계에 있는 취득단계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서의 가별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정설로 형사 정책적인 위험분배의 원리에 따라 카드 발급신청자를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적이 이유를 개진하는 견해도 있다. 즉 정책적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을 제공받을 만한 재산 상태나 거래실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신용불량회원의 카드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카드회사의 위험부담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判例의 態度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판례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행위 자체를 사기죄로 보고, 그 이후에 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모두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로 보고 있다⁶¹⁾.

(4) 小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財産上の 損害'라는 요건이 독일과 달리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우리 형법을 해석할 때, 사기죄의 재산상의 손해요건이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넓어지므로 재산범죄로서 침해범인 사기죄의 해석상 '재산상의 손해'요건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행위가 '재산상의 손해'를 발행시킨 것인가?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에서의 '財産'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하나의 플라스틱 조각인 것을 넘어 소지인이 신용카드회원임을 증명하는 기능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2조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 물론 장차 있을 손해의 위험이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손해발생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궁극적인 손해발생 이전에 이미 재산상의 손해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⁶²⁾

그러나 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발급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명백히 구분되는 행위유형이므로 카드 발급 시에 포괄적인 신용공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재산상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재산상 손해발생의 추상적인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財産上 損害의 發生"을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한 사기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2) 信用卡 取得 後 財産關係가 惡化된 경우

신용카드의 취득은 기망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카드 취득 후 파산 등으로 재산관계가 악화되어 지급능력을 상실한 경우, 이 사실을 카드회사에 고지하

61) 대판 1996. 4. 9., 95도 2466.

62) 윤해성, 앞의 논문, 30면.

지 않고 그대로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不作為에 의한 欺罔行爲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위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근거한 보증인 지위가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 인정은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인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⁶³⁾

따라서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취득 후 재산관계가 악화된 경우, 즉 지불능력이 없게 된다면 카드에 의한 거래는 행할 수 없지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한 단계에서 자기의 악화된 재산상태에 대해서 형법상 고지의무를 과한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한 신용카드회사에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財產侵害의 蓋然性과 詐欺罪의 財產上 損害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⁶⁴⁾ 신용카드소지자가 계약과 임의의 의사에 따라 재산상태를 고지하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고지를 강제한다는 것은 재산상의 프라이버시도 침해하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신용카드발급신청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의 변화에 따른 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自己名義 信用卡의 不正使用

1) 序

신용카드의 발급이 급증하여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

63) 박상기, 앞의 책, 311-312면.

64) 오경식, 앞의 논문, 137면.

던 새로운 범죄행위가 출현하여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이다. 그런데 위의 신용카드범죄의 유형적 분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를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나눌 때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즉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 인양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이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⁶⁵⁾

그러나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가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하급심판결⁶⁶⁾만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맹점에서의 신용구매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신용대출(현금)서비스라는 두 가지 불법유형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본 판결 후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본 판결과 동일한 견해를 밝힌 대법원 판결이 본 판결을 선고한 제1부에서 다시 선고되었다.⁶⁷⁾

(1) 大法院 判例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다.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진다.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

65) 물품구입행위에 대해서는 대판 1992. 6. 9., 92도77 ; 대판 1993. 11. 23., 93도604 ; 대판 1996. 7. 12., 96도1181 ; 대판 1997. 1. 21., 96도2715 “1997. 3. 1 판례공보” 등이 있으며, 유사판례로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 대판 1998. 2. 27., 97도 2974 등이 있다.

66) 서울지판(형) 1982. 10. 15., 82고단4357 ; 수원지판 1993. 3. 30., 93고단545 ; 수원지판 1993. 6. 9., 93고단2167 ; 인천지판 1995. 1. 12., 94고단5439 등.

67) 대판 1996. 5. 28., 96도 908.

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 시에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 바, 현금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만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만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대금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카드사용으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만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라 할 것이다.⁶⁸⁾

(2) 問題의 所在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논점들은 위의 판결에 나타난 대법원의 견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⁶⁹⁾

첫째, 辨濟할 意思와 能力 없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1항)가 성립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 판결에서는 언급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신용카드 자체가 각종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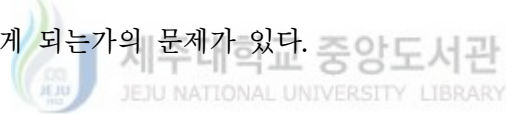
68) 위 판결의 제1심·제2심 판결은 각각 수원지법 1995. 9. 28., 95노 1148판결과 수원지법 1996. 3. 14., 95노421(병합)판결이다.

69) 강동범,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대법원 1996. 4., 9선고, 95도2466판결)”, 고시계, 1997. 12., 44-45면 ; 이상돈, “자기신용카드의 부정발급·사용”, 고시계, 1998. 11., 110면 ; 장영민,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5., 82-83면 ; 장영민, “자기명의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상)”, 고시연구, 1997. 5., 65면 참조.

나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대금지불의 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의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과연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 중 하나인 '기망'에 해당하는가와 누구의 '착오'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또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의 문제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고소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죄수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貸出金을 辨濟할 意思나 能力 없이 신용카드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고 갚지 않는 행위는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현금서비스가 사람을 매개로 하지 않고 현금자동지급기라는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계'에 대한 기망'내지 '기계의 착오'가 과연 가능한가의 여부와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서비스는 카드 발급 시에 이미 착오에 바진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처분행위의 필연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나아가 개정형법에 신설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는가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물품구입행위 및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죄수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2) 加盟店에서의 不正使用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경우로는 신용카드회원이 처음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의 목적으로) 카드회사에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사용한 경우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급부를 수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⁷⁰⁾ 이러한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카드사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이룬 구성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며, 실제로 그 견해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

70) 최병록, 앞의 논문, 19면.

다. 이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발생, 처분효과의 직접성, 이익과 손해의 동질성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⁷¹⁾.

한편 삼당사자 신용카드의 법률관계를 보면 카드 발행회사는 카드회원과 이미 회원규약을 통해 대금지급의 지시라는 형태의 지속적인 채무관계에 있고, 반면 가맹점과는 가맹점규약을 통해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형태의 보증계약을 맺고 있다. 이러한 3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유기적인 결합관계로 인정한다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행위의 불법내용은 신용카드체계의 '외부로부터의 사기'라기 보다는 '내부에 의한 권한남용'이라는 점에서 배임죄의 범죄유형에 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⁷²⁾도 있다. 즉, 일본의 통설과 판례처럼 신용카드의 법률관계 중 카드소지자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계약만을 부각시키고, 그 대신 신용카드의 기능을 단순히 대금의 결제수단으로만 파악하게 된다면 '무전취식'형태와 같이 사기죄를 쉽게 인정하게 되나, 독일과 같이 신용카드의 특수성을 전면내 내세워 이러한 3자간의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그 이론구성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⁷³⁾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기타 관련문제들을 언급하기로 한다.

(1) 詐欺罪의 成立與否

가) 詐欺罪 肯定說

사기죄 긍정설은 지불능력과 의사 없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그리고 이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봄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신용카드체계의 기능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법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본다.⁷⁴⁾

71) 노용우, 앞의 논문, 13면.

72) 김영환, "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신용카드 제11호, 1996. 6., 28면 ; 이상돈, "자기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사용", 117면.

73) 최광혁, 앞의 논문, 55면.

74) 이상돈, 앞의 논문, 112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이 견해에 따르고 있으며 오히려 사기죄 성립 그 자체보다는 사기죄에서의 피기망자와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단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가 혹은 편취한 것이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 하는 점을 구별할 실익이 있을까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 카드회사가 고소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원이 사용한 카드가맹점이 불분명할 때가 많으며, 사기죄의 법리상 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회원과 가맹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공소권유무가 문제되며,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를 가려야 하는 경우 누구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라고 볼 것인가, 그리고 공소사실 혹은 범죄사실의 기재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많은 문제가 달라지므로 충분히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⁷⁵⁾

a) 加盟店이 被欺罔者 및 被害者라는 見解

이 견해에 따르면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 지불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默示的)기망행위이고, 지불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가맹점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 착오이며, 가맹점이 카드소지자와 거래를 한 것이 재산처분행위이다. 또한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대해 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대금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민사상의 효과이고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해 준 것이 손해(發生의 危險)이며, 카드이용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재산상 이득에 해당한다.⁷⁶⁾

그 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 부터 신용카드대금을 확실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맹점이 대금지급의사나 능력이 없는 신용카드회원에 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가맹점도 이를 묵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⁷⁷⁾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이 대금 지급의사나

75) 최태형, 앞의 논문, 482면.

76) 이종갑,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8호, 경상대학교, 1999. 2., 93-95면. ; 이상돈, “신용카드체계의 위험분배와 형사정책-자기 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사용의 범죄화 정책에 대한 비판”,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4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여름호, 120-121면.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구입을 신청하는 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가맹점이 속은 것은 가맹점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것은 결국 그 이용대금을 신용카드회사에 대체지급 시킨 뒤 이를 동 회사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고 카드를 제시받은 가맹점으로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용객으로부터 대금이 신용카드회사에 변제될 것을 당연시하여 이용객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기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카드회원의 지불의사나 능력에 관한 조사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자기명의의 카드인 경우 이러한 조사에 대신할 수 있는 신용성의 표상으로서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만약 이용객이 대금지불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맹점은 거래에 응하지 않는다⁷⁸⁾는 것이다.

셋째,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만으로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용건으로 하지 않으며,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이어서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⁷⁹⁾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은 통상의 거래에 있어 가맹점이 카드제시자의 의사나 능력을 조사 판단하는 기준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 더욱이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경우라면 그 자체가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성을 인정케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가맹점은 카드제시자의 대금지불 의사나 능력에 무관심하다는 사실과 가맹점이 반드시 카드제시자의 대금지불의사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 등이 널리 인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한다.⁸⁰⁾

b) 加盟店이 被欺罔者이고 카드會社가 被害者라는 見解

이 견해에 따르면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 지불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

77) 조성권, 앞의 논문, 44면.

78) 이종갑, 앞의 논문, 89면.

79) 최광혁, 앞의 논문, 56면.

80) 윤해성, 앞의 논문, 83면.

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기망이고, 지불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가맹점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 착오이며, 가맹점이 카드소지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재산처분행위가 된다. 또한 카드회사가 가맹점이 대금결제신청에 대체입금을 한 것이 손해발생이 되며, 카드이용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재산상 이득에 해당한다.⁸¹⁾

이 입장의 주된 근거는 첫째, 카드명의인의 대금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가맹점은 위 카드 명의인이 진실로 그 대금을 카드회사에 지불할 것으로 오신하여 매출표를 카드회사에 보낸 것이므로 피기망자는 가맹점이고 가맹점이 매출표를 카드회사에 송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을 받게 되는 점에서 가맹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카드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⁸²⁾

둘째,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대상은 외적 사실인가 또는 내적 사실인가를 묻지 않으므로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은 기망행위의 대상이 되며, 기망과 착오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피기망자가 재산상의 피해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도 가맹점이 카드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의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전보 받지 못하므로 가맹점이 직접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해야 하는 관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맹점을 피기망자와 피해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⁸³⁾

또한 매출표의 송부행위에 의해 자동적으로 신용카드회사의 대체지불이 행해지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맹점에 처분권한이 있는 듯하나 가맹점이 처분행위는 상품의 제공에 관한 것이고, 가맹점은 신용카드회사의 재산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맹점에 신용카드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있다.⁸⁴⁾

81) 노용우, 앞의 논문, 137면-138면 ; 박상기, 앞의 책, 335면 ; 이재상, 앞의 책, 304면 ; 이진환, 앞의 논문, 243면 ; 장영민, “자기명의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 85면-88면 ; 조준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형법적 의의”, 고시계, 1999. 2., 151면 ; 이상돈, “자기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사용”, 114면.

82) 이재상, “불법영득의 의사와 크레디트카드사기”, 고시계, 1994. 6., 199면.

83) 장영민,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상)”, 71-72면.

c) 카드會社가 被欺罔者이고 被害者라는 見解

이 견해에 따르면 지불의사와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한 것이 기망이고, 이로써 카드회사가 신청자의 신용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착오이다. 이에 기초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것, 즉 신용공여(포괄적인 대금대출)의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재산처분행위이다. 또한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함으로써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해 대체 입금해야 할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손해이며,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점이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한다.⁸⁵⁾

이에 대한 논거는 가맹점은 카드제시자의 지불의사나 능력에는 관심이 없으며, 카드의 유효성과 신용카드명의인의 동질성만 확인하면 될 뿐이고, 차후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가맹점에 대한 기망행위나 착오 또는 재산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을 매개로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로 하여금 가맹점에 대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카드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카드회원이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기망자 및 피해자를 카드회사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착오의 논증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즉 카드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상의 대금지불이 청구되었을 때 비록 신용카드소지자가 대금지불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점을 알면서도 가맹점에게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그 결함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⁸⁶⁾

나) 詐欺罪 否定說⁸⁷⁾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이 있어야 하

84) 조성권, 앞의 논문, 46면 각주참조.

85) 임양운, “신용카드범죄의 실무상 문제”, 저스티스 제29권 제3호, 한국법학원, 1996. 12., 192면 ; 이상돈,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사용”, 113면.

86) 이에 관하여는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표가 송부되어 오면 그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신용카드제도의 기본전제이므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윤해성, 앞의 논문, 89면 ; 노용우, 앞의 논문, 134면.

87) 김형렬, 앞의 논문, 95면 ; 손동권, 앞의 논문, 346-347면 ; 오경식, 앞의 책, 109면 ; 이상돈, “자기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사용”, 115-116면.

는데, 카드의 제시를 통하여 설명되는 것은 단지 카드제시자가 명의인이라는 것과 카드가 유효하다는 것에 그치고, 대금을 카드회사에 납부하겠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신용카드의 제시행위 그 자체는 채무결제의 묵시적 행위라기보다는 가맹점의 카드회사에 대한 貸金支給請求의 確保라는 의미의 표시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카드제시행위가 설사 기망행위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는 카드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 보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등의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착오의 요건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맹점은 카드의 제시와 함께 묵시적으로 설명된 내용과 관련하여 오로지 카드의 제시와 함께 묵시적으로 설명된 내용과 관련하여 오로지 카드의 제시자가 카드의 명의인이고, 또한 이 카드의 유효여부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금지불의사나 능력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셋째,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카드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표가 송부되어 오면 무효 통지된 신용카드가 아닌 한 회원의 지불의사나 능력의 존재유무에 관계없이 가맹점에 결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처분행위시에 신용카드회사에 회원의 지불의사나 능력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고, 설령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는 착오의 유무에 관계없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피해자해석학적 관점에서 카드회사가 회원의 신용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카드를 발급해 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방책에도 무심한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다는 견해⁸⁸⁾도 있다.

다) 判例의 態度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론

88) 최광혁, 앞의 논문, 56면.

구성에 있어 가맹점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된다는 것⁸⁹⁾과 가맹점을 피기망자로 하고 카드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된다는 것⁹⁰⁾으로 하고 하급심판례의 태도가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앞서 소개한 '대판 1996. 4. 9. 95도2466'에서는 【기망(카드발급 신청 시 대금결제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피기망자(카드회사)의 착오-피기망자의 처분 행위(카드발급에 의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재산상 이익의 취득(물품구입대금의 대출)-피해자(카드회사)의 손해】라는 형태⁹¹⁾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⁹²⁾ 카드회사가 피기망자이고 피해자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라) 小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해석론과 입장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는 사기죄의 구조에서 생기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는 법 현실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⁹³⁾

자기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사기죄가 되려면 신용카드회원의 가장에 의한 기망행위와 그에 의한 착오가 발생해야 하며, 착오에 의해서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는 신용카드의 발급 신청 시에 변제의 사나 능력이 있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신용카드를 물품구입을 위하여 가맹점에 제시하는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용카드거래는 미래의 대금결제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며, 카드회원이 카드회사

89) 수원지방법원 1993. 3. 30. 선고, 93고단545(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신용카드업법위반)판결 : 수원지방법원 1993. 6. 9. 선고, 93고단2167(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업법위반)판결.

90) 수원지방법원(남부지원) 1993. 6. 16. 선고, 93고단3, 93고단526(병합)판결 : 인천지방법원 1995. 1. 12. 선고, 94고단5439판결.

91) 카드사용으로 인한 代金決濟意思와 能力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假裝하여 카드회사를 欺罔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錯誤를 일으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欺罔당한 카드회사의 信用供與라는 瑕疵있는 意思表示에 편승하여 가맹점을 통한 物品購入代金을 대출받아 카드발급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92) 박성호, 앞의 논문, 50면.

93) 이종갑, 앞의 논문, 93면.

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자격을 부여받는 것도 바로 신용카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므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자는 단순히 카드가 자기의 것이고 그것이 유효하다는 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⁹⁴⁾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회원이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 지급일에 신용카드 발행회사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의사와 능력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물품판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이 대금지급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그 행위는 가맹점을 착오에 빠뜨린 묵시적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맹점의 물품 내지 용역의 제공은 이러한 기망에 기하여 착오속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있다.⁹⁵⁾ 이점에서 기망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가맹점을 피기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與信專門金融業法 제19조 제1항에서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거래를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거래에서 유효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송부하여 대금청구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발행회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이 당연하고 또한 현실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이 카드회원이 작

94) 강동범,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판결)”, 52면.

95) 이 때 처분자인 가맹점은 카드회사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일정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지위설에 따를 때 카드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영민,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 87면.

성한 매출전표에 기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의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은 기망행위 및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시 가맹점의 소유권 등의 권리가 채권으로 전환되어서가 아니라(따라서 손해발생 내지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용거래라는 형태의 다소 위험성을 내포한 거래방식을 승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⁹⁶⁾ 따라서 이러한 거래제도와 현실을 직시할 때 가맹점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한 신용카드발행회사가 가맹점에 의한 처분행위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회사를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목시적 기망행위로 가맹점은 이로 인해 회원이 후에 대금을 결제할 것으로 착오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카드회사는 처분행위의 결과 손해가 발생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2) 其他 財産 및 經濟犯罪의 成立與否

가) 背任罪의 成立與否

만일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회원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 달리 배신구성요건 이외에 권한남용구성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신구성요건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현재 통설과 판례는 背信說⁹⁷⁾에 따르되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⁹⁸⁾

또한 배임죄의 財産管理(재산의 유지와 증식)의 義務는 대내적 신임관계에 따라 형성된 사무의 본질적 내용이어야 하며, 배임죄의 업무주체에게 사무처리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된다.⁹⁹⁾ 그러나 신용카드회원의 카드회사에 대

96) 장영민, “자기명의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 86면.

97) 이는 배임죄의 본질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배 내지 신임관계의 침해에 있다고 한다. 즉 배임죄의 본질은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권한의 남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는 바로 신임관계에서 발생한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98) 최광혁, 앞의 논문, 68면.

한 신의칙상의 의무는 계약에 따라 행위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재산관리의무로는 볼 수 없다.¹⁰⁰⁾ 따라서 배임죄에 관하여 배신설에 입각하고 이에 대한 재산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우리 형법 하에서는 이러한 남용행위를 배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與信專門金融業法上의 信用卡 不正使用罪의 成立與否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자기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문하고 신용카드 등을 위조 변조,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의 판매사용, 그리고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판매 사용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그 이외의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금결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상의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그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 되고 있으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의 흠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⁰¹⁾



3) 現金自動引出器에서의 不正使用

오늘날 대부분의 신용카드로는 가맹점에서 신용구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인출기(CD : Cash Dispenser)를 통해서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바, 이는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기계(현금자동인출기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하여 현금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⁰²⁾

99) 이상돈,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사용”, 117-118면.

100)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발급회사와의 회원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결제기일에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고 회원회비를 납부할 의무일 뿐이지, 신용카드발급회사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1) 윤해성, 앞의 논문, 93-94면 참조.

대법원 판례¹⁰³⁾는 현금 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행위를 가맹점에서의 신용구매와 같이 카드취득에 따른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학설은 이 경우의 죄책에 관하여 竊盜罪說, 詐欺罪說, 無罪說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1) 詐欺罪, 竊盜罪의 成立與否

가) 詐欺罪說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¹⁰⁴⁾에 따르면 은행과 현금자동인출기를 일체로 고찰하여, 즉 현금자동인출기의 작동은 설치자인 은행의 지불의사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 신용카드를 주입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모르고 현금자동인출기를 작동하는 것은 착오에, 그리고 인출기가 현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산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점차 기계화 자동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현금자동인출기 설치자의 이용자에 대한 정당이용의 신뢰를 파괴하는 부정사용은 범죄유형으로서 소박하고도 퇴화적인 범죄인 절도죄 이상의 위법성을 갖는 것이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¹⁰⁵⁾

그리고 현금자동인출기설치자가 미리 예정해 놓은 방식에 따라 신용카드를 넣어 현금을 꺼내는 행위를 그 기계를 깨뜨리고 현금을 꺼내 가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된다는 견해가 시대의 변천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¹⁰⁶⁾

나) 竊盜罪說

절도죄설은 기계인 현금자동인출기에 대하여는 기망과 착오를 생각할 수 없기 때

102) 강동범,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판결)”, 53면.

103) 대판 1996. 4. 9., 95도2466 ; 대판 1996. 5. 28., 96도 908.

104) 임양운, 앞의 논문, 175-177면 ; 허일태, 앞의 논문, 120-121면.

105) 이종갑, 앞의 논문, 96면.

106) 조성권, 앞의 논문, 57면.

문에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¹⁰⁷⁾ 이 견해에 의하면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발급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만, 신용카드의 발급이 카드발급 이후에 당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받는 행위를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카드발행자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 카드보유자에 한하여 현금자동인출기의 조작에 의한 현금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하고, 카드 발행 시에 카드보유자에게 그러한 부정이용 목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이 견해에 의하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와 자기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를 구별할 필요는 없으며,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를 대법원¹⁰⁸⁾은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행위를 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¹⁰⁹⁾



다) 無罪說

무죄설은 이 경우 사기죄나 절도죄의 성립가능성을 부정하고, 이 행위를 포섭할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¹¹⁰⁾ 먼저 절도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상

107) 이 경우는 카드이용자의 欺罔行爲에 의하여 피해자가 誤信함으로써 현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위 카드이용자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그 지급기의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긴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강동범,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364면 ; 김우진, 앞의 논문, 280면 ; 정우석, “형법상 신용카드범죄”, 법학연구 제5권 2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1998. 11., 97면.

108) 대판 1995. 7. 28., 95도997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은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위 양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9) 강동범, “신용카드에 대한 형사법적 제도적 대책”, 16면 ; 이종갑, 앞의 논문, 96면.

110) 김영환,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인 문제점”, 262면 ; 노용우, 앞의 논문.

적으로 현금자동인출기의 관리자는 카드소지여부와 그 카드에 속하는 비밀번호 인 지여부를 확인하도록 기계장치를 조작하여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현금자동인출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자 인지를 확인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현금자동인출기의 지시에 따라 기계를 조작하는 자에게는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조건 없는 점유이전의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소지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자동인출기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현금자동인출기의 동의아래 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¹¹⁾ 또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기망의 대상은 사람인데,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을 사람을 기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처분행위를 야기한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으므로 횡령죄도 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도 아니므로 배임죄도 되지 아니한다.

라) 判例의 態度



a) 일본과 독일

일본의 경우 판례는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의 유형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신용카드 발급 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구별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범죄가 되는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적정하게 카드의 교부를 받은 다수의 회원 중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조작할 때 이미 변제의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예상하여야 한다. 다수의 회원 중에 이러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로서는 처음부터 바라던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회원에게 현

148-149면 : 손동권, 앞의 논문, 349면 ; 이상돈, “자기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사용”, 120-121면 ; 하태훈,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형사판례연구(4), 1996, 330면 이하.

111) 박주환, 앞의 논문, 63-64면.

금자동인출기에서의 카드조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행위자체는 회사에 의하여 허용된 것을 허용된 방법으로 카드 조작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일 뿐이므로 절취한 것은 아니다.¹¹²⁾

독일에서는 이 행위에 대한 사기죄와 배임죄의 해당여부가 논의되었는데, 판례(BGHSt 33, 244)는 사기죄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않는 이유는 현금자동인출기 설치자는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표상을 가지지 않으므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있으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카드소지자는 카드를 발급한 카드회사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하였다.¹¹³⁾

b)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우리나라의 하급심을 살펴보면 절도로 의율한 판례¹¹⁴⁾와 사기로 의율한 판례¹¹⁵⁾로 나뉘고 있다.¹¹⁶⁾ 그런데 대법원은 사기죄설¹¹⁷⁾을 취하여 절도죄설을 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 사용에는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대출을 카드회사가 그 지급을 미리 허용한 것이고, 단순히 그 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에서 사기죄설을 지지하는 판례라 할 수 있다.¹¹⁸⁾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나,¹¹⁹⁾ 자기명의신용카드를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112) 강동범,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판결)”, 54-55면.

113) 이종갑, 앞의 논문, 98면.

114) 서울형사지판 1993. 12. 20., 93고단10264, 10800 ; 서울형사지판 1993. 12. 27., 93고단10453 ; 서울형사지판 1994. 10. 20., 94고단5354 ; 서울형사지판 1994. 10. 21., 94고단6064 ; 서울형사지판 1994. 10. 27., 94고단5284.

115) 서울형사지판 1994. 10. 20., 94고단6419 ; 서울형사지판 1994. 10. 21., 94고단6038.

116) 임양운, 앞의 논문, 176면.

117) 대판 1996. 4. 9., 95도2466참조.

118) 이종갑, 위의 논문, 99면.

119) 앞의 대법원판례 대판 1995. 7. 28., 95도997 참조.

사기죄를 구성하게 된다.

c) 小結

현금자동인출기에 입력된 은행의 프로그램은 단지 진정한 카드를 주입구에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카드사용자에게 자동화된 현금인출절차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현금 자동인출기는 이처럼 인간이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대로만 작동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을 스스로 설정하거나 어떤 의사활동을 자율적으로 행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자기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전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기망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기계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대한 기망이나 착오는 있을 수 없다는 점¹²⁰⁾에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절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신용카드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볼 때, 카드발행은행은 카드회원과 카드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지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카드 명의인에 대하여 계약상 정해진 처분범위 안에서 점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것¹²¹⁾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현금에 대한 점유가 계속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은행)에게 있다는 절도죄說의 논지는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현금의 취득은 절도죄의 점유배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¹²²⁾

또한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물건을 가져간 경우와는 달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한 경우에는 대가의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¹²³⁾ 정당한 권리자

120) 현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타인'은 '사람'에 국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기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121) 그러나 이는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람은 '누구든' 현금서비스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화체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카드 소지인에게 선별하여 지급한다는 의사가 화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재상, "현금카드의 사용절도와 부정사용", 고시계, 1996. 11., 195면). 따라서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정당한 신용카드의 사용은 구별되어야 한다.

122) 박성호, 앞의 논문, 60면.

123) 장영민, "자기명의를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 90면.

가 단지 이를 남용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게 현금 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곧 절도죄라고 보게 된다면 현금서비스를 받을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다가 그 후 사정이 변경되어 금전채무를 변제한 카드소지인도 처벌될 뿐만 아니라, 카드 명의인이 위탁을 받아 현금서비스를 받는 제3자도 형법상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¹²⁴⁾ 이렇듯 자기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해석론적으로 사기죄나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其他 財産 및 經濟犯罪의 成立與否

가) 橫領 背任罪의 成立與否

먼저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인출된 현금을 착복한 행위가 횡령죄(형법 제355조 1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명의인의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 이다. 그러나 현금자동인출기의 관리자인 은행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카드사용자에게 '정당한 권원'을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¹²⁵⁾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자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없다.

한편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카드명의인의 카드회사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위반한 것이기에 그 불법유형이 배임죄와 유사하다. 이에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물품구입행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임죄의 본질에 관해 배신설의 입장에 따를 경우에는 법적 권한남용행위를 배임죄로 규율할 수 없다.¹²⁶⁾ 또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¹²⁷⁾인데, 카드 명의인은 신용카드발급회사와 납부할 의무를 질 뿐 신용

124) 이종갑, 앞의 논문, 99면.

125) 이상돈, "자기신용카드의 부정발급·사용", 121면.

126) 조성권, 앞의 논문, 59면.

127)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본인)과의 내부관계에 기한 임무에 따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 내부관계에서는 사무처리를 할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

카드발급회사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카드 명의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배임죄로 규율할 수는 없다.

나)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의 成立與否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에 본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야 하였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와 같이 진실한 데이터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유형, 즉 자기의 신용카드를 투입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01년 12월29일에 법률의 개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개정 전 형법은 ‘허위의 명령’과 ‘부정한 명령’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자동인출기의 부정사용에 대해서조차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이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여 많은 부분이 해소 되게 되었다. 그러나 改正 刑法에서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현금자동인출기에 신용카드를 투입 조작하여 행위자가 취득하는 것은 재물인 현금이므로 역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¹²⁸⁾

다) 與信專門金融業法上의 信用卡 不正使用罪의 成立與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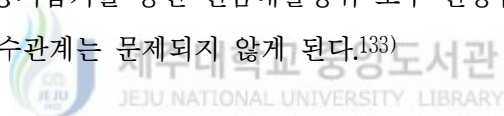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는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28) 조성권, 앞의 논문, 61면.

3. 罪數關係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인 '대판 1996. 4. 9. 95도2466'은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현금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대출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 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기망에 의한 신용카드의 발급에서부터 물품의 구입 그리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²⁹⁾ 대법원은 수회에 걸친 사기행위를 연속범으로 보아¹³⁰⁾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카드발급신청과 카드사용은 별개의 의사에 기한 행위이므로 양자는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굳이 각각의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경우 경합범관계를 인정하는 것¹³¹⁾이 옳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¹³²⁾이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발급행위, 가맹점에서의 물품구입행위,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행위 모두 현행법상 가벌적이지 않다는 견해에 따른다는 죄수관계는 문제되지 않게 된다.¹³³⁾



第2節 他人名義 信用卡의 不正取得. 使用

1. 序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는 여러 신용카드 범죄유형 중에서 가장

129) 이에 대하여 본 판례에 찬동하면서 그 의미를 대금지불의 의사와 능력 없이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앞의 사기죄에 포섭되는 불가벌적 이익취득행위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손동권, 앞의 논문, 349면.

130) 연속범이 되려면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여야 하고,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해야 한다.

131) 강동범,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383면 ; 최광혁, 앞의 논문, 77면.

132) 대판 1996. 7. 12., 96도1181.

133) 이상돈,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발급·사용”, 123면.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에 대한 판례는 국내외에 다수 집적되어 있다.¹³⁴⁾ 우리나라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서와는 달리 가맹점과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부정사용을 포괄하는 판례는 없고,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례에 대한 판례와 절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례에 대한 판례가 각각 있다.¹³⁵⁾

이러한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와 비교해 볼 때 좀더 명쾌한 해석과 논의가 형법 해석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¹³⁶⁾, 학계의 해석론은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행위를 제외하면 거의 일치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 취득하는 행위, 가맹점에서 부정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부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판례와 문제점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2. 他人名義 信用卡의 不正取得

1) 信用卡 所有者로부터의 不正取得

(1) 信用卡 自體의 截取·騙取 등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절취, 강취, 갈취, 편취 또는 횡령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에 대하여 형법상 일반죄명인 절도, 강도, 공갈, 사기, 횡령 등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용카드 자체에 “재물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¹³⁷⁾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영득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 강취, 갈취, 편취, 또는 횡령 등을 하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목적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의 시점에서 각각의 재산범죄가 성립된다.¹³⁸⁾ 대법원 역시 타인의 신용카드

134) 노용우, 앞의 논문, 123면.

135) 박성호, 앞의 논문, 64면.

136) 노용우, 위의 논문, 123면.

137) 본 논문 제2장 제2절 II.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참조.

138) 이에 대해 신용카드 절취의 불법내용은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불법내용에 비해 경미하기 때문

를 절취, 강취, 갈취한 경우에 각각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¹³⁹⁾, 강도죄¹⁴⁰⁾, 공갈죄¹⁴¹⁾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2) 신용카드의 使用竊盜

절도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¹⁴²⁾이 없는 이상 불필요설¹⁴³⁾도 있으나, 통설¹⁴⁴⁾과 판례¹⁴⁵⁾는 이를 긍정하는 필요설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원소지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절취한 경우, 즉 사용절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이 경우에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는 영득의사의 내용과 대상(객체)이 무엇인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가) 領得意思의 內容

영득의 의사는 권리자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배제의사, Ent eignung)와 이러한 재물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소유자처럼 이용한다는 의사(이용의사, Aneignung)를 내용으로 한다.¹⁴⁶⁾ 이러한 배제의사는 반드시 영구적일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¹⁴⁷⁾ 미필적 의사로도 충분한데 반해, 이용의사는 절취행위의 궁극적 목표와 관련되기 때문에 확정적 의사가 필요하다.

에 신용카드의 절취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태훈, 앞의 논문, 342면.

139) 대판 1992. 6. 9., 95도77 ; 대판 1993. 11. 23., 93도603 ; 대판 1995. 7. 28., 95도997 ; 대판 1996. 7. 12., 96도1181 등.

140) 대판 1997. 1. 21., 96도2715 ; 대판 1998. 2. 27., 97도2974 ; 대판 1998. 5. 21., 98도321 전원합의체판결 등.

141) 대판 1996. 9. 20., 95도1728.

142) 독일 형법 제242조1항에서는 “불법영득할 의사로 타인의 동산을 절취한 자”(Were in fremde bewegliche Sache einem andern in der Absicht wegnimmt, diesel be sich rechtswidrig zuzueignen)라고 규정되어 있다.

143) 정성근, 앞의 책, 336면.

144) 박상기, 앞의 책, 270면 ; 배종대, “형법각론”, 287면 ; 이재상, 앞의 책, 264면.

145) 대판 1973. 2. 28., 72도2812 ; 대판 1982. 2. 23., 81도2371.

146) 박상기, 앞의 책, 271면.

147) 대판 1988. 9. 13., 88도917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사용절도의 경우에는 반환의사로 인하여 영구적인 제거의사가 부정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¹⁴⁸⁾ 신용카드를 사용절도한 자에게도 카드에 대한 반환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아 카드라는 물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나) 領得意思의 對象(客體)

영득의사의 대상(혹은 객체)이란 절도범이 도품을 권리자처럼 이용한다고 할 때 그 이용의 본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물체설과 가치설 및 절충설(결합설)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영득의 의사는 물체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물체설에 의하면 물체는 반환하면서 가치를 취득한 예금통장 절도의 경우에 영득의 의사를 부정해야 하고, 반대로 영득의사의 객체가 물체 속에 화체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라고 이해하는 가치설에 의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 없는 재물을 取去한 때에는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절도죄를 이득죄로 변질시키는 결과가 된다.¹⁴⁹⁾ 물체와 가치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 지나지 않으므로 영득의 의사의 객체는 물체 또는 그 물체 속에 화체된 가치라고 이해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며 통설과 판례의 입장¹⁵⁰⁾이다. 그러나 절충설(결합설)에 의할 때에도 영득의사의 객체가 되는 가치는 그 물체에 화체된 고유한 기능가치에 제한되고 사용가치는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¹⁵¹⁾

이렇게 재물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기능가치로 구분할 때 사용절도의 경우 단순히 사용가치를 침해한 경우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원소지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절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고유한 기능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카드의 사용가치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8) 이재상, “현금카드의 사용절도와 부정사용”, 191면.

149) 이재상, 위의 논문, 191면.

150) 박상기, 위의 책, 272면 ; 이재상, 앞의 책, 264면 ; 대판 1981. 10. 13., 81도2394 ; 대판 1995. 7. 28., 95도997.

151) 이재상, “현금카드의 사용절도와 부정사용”, 191면.

다) 判例의 態度¹⁵²⁾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가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현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불법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信用卡社로부터의 不正取得

이는 타인 또는 허무인(가공인)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수단을 통하여(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칭하거나) 마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처럼 행세(타인명의를 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모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는 행위, 즉 카드담당자를 기망하는 카드발급 신청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의 문제로, 카드취득을 위해 작성한 카드 입회신청서를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개념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¹⁵³⁾

또한 이러한 신청에 의하여 카드 발행회사 직원을 기망하고 신청인을 명의자로 오인한 직원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타인명의를

152) 대판 1998. 11. 10., 98도264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잠시 지갑을 건네 받은 후 몇대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금7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현금카드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례).

153) 윤해성, 앞의 논문, 32면.

모용하여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수반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서 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받게 된다.¹⁵⁴⁾ 이때 고의로 카드입회신청서의 부정기재행위를 한 카드입회신청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개념¹⁵⁵⁾에 포함되므로 사문서위조죄¹⁵⁶⁾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카드입회신청서에 부정기재를 함으로써 카드발급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를 요건으로 맞도록 사칭하고, 이를 카드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르는데, 신용카드의 명의자는 카드발행회사로 볼 때 신용판단, 대금회수절차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망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¹⁵⁷⁾ 따라서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행위는 카드발행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제3자가 아닌 허무인 또는 사자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판례¹⁵⁸⁾는 사문서위조의 타인명의를 실재인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설¹⁵⁹⁾은 실재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사문서위조죄의 타인명의 모용은 명의인에 대한 사칭이 있으면 족하므로 현실의 작성자가 문서에 표시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명의인이 반드시 실재인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허무인 또는 사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술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¹⁶⁰⁾ 그러나 허무인이 입회신청서를 작성한 본인과 동일시되는 본인의 별명이나 필명 등인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는 볼 수 없으며, 앞에

154) 인익수, 앞의 논문, 51면.

155) 문서란 법률상의 의미를 갖는 작성명의인의 의사 또는 관념이 표현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①계속적 기능과 ②증명기능 ③ 보관기능을 전제하고 있다. 사문서의 경우 형법은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관한 文書" (제231조)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156)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행위는 위조인데, 이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타인명의를 모용이란 명의인에 대한 착오를 야기시키는 동일성의 사칭을 의미하는 것이다.

157) 박주환, 앞의 논문, 22면.

158) 대판 1991. 1. 29., 90도2542 ; 대한 1992. 12. 24., 92도2322.

159) 박상기, 앞의 책, 528-529면 ; 이재상, 앞의 책, 506면.

160) 유명상,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공군법률논집 제17호, 1998. 11., 12면.

서 살피본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 취득한 경우와 같은 법리로 해결해야 한다.¹⁶¹⁾

3) 신용카드의 僞造, 變造

신용카드 위·변조범죄는 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등 지능화·과학화되고 있어 신용카드업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실제의 거래에 있어 현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며 또한 유가증권 이상의 유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조 또는 변조는 거래의 안정에 회복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위·변조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이용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신용카드상의 마그네티션 또는 IC칩에 내장되어 있어 그 정보가 동일할 경우, 비밀번호가 필요한 현금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달리 그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¹⁶²⁾

신용카드의 위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모양, 재질, 디자인 및 엠보싱 내용(신용카드 발행회사명, 신용카드 회원번호, 신용카드유효기간, 신용카드앞면의 영문서명 등) 등을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만드는 범죄를 말한다.¹⁶³⁾ 신용카드의 변조란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비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창출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¹⁶⁴⁾ 신용카드의 문서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는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일종으로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않는 자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내거나 진정한 카드에 변경을 가하면 사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별도의 처벌규정(동법 제70조 제1항 1호)을 두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¹⁶⁵⁾

161) 박성호, 앞의 논문, 67면 ; 최광혁, 앞의 논문, 82면.

162) 한국판례연구원 편, 앞의 책, 202면.

163) 위조란 유형위조로서 신용카드 등을 신용카드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만드는데, 이러한 권한 없이 허위로 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응렬, “신용카드위조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160면.

164) 성수임, 앞의 논문, 39면.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있어 회원 서명부분에 문서의 본질적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원 서명란에 서명되어 있지 않은 신규 또는 갱신카드를 부정 입수해 신용카드상의 회원 서명란에 자기의 필적으로 서명·기재한 경우도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여 위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서위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의 위반사항이 되고, 카드회원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는 신용카드의 서명을 말소하고 자신이 새로 서명해 넣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⁶⁵⁾

다만 신용카드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전자적 기록인 자기띠 부분은 가시성·가독성·영속성을 결하여 전통적인 문서의 개념에 포섭 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종래에는 자기띠 부분을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였다.¹⁶⁷⁾ 그러나 개정형법(1995. 12. 2)제 232조의 2에서는 사전자기기록위작·변작죄를 신설하여 전자적 기록물을 기존의 문서의 개념으로부터 구분함으로써 현재 신용카드의 자기띠 부분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조·변조행위는 사전자기기록위작·변작죄에 해당하고,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별도의 처벌규정(동법 제70조 제1항 1호)을 두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하므로 신용카드 위·변조범죄의 구체적인 수법이나 유형¹⁶⁸⁾에 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 他人名義 信用卡의 不正使用

1) 加盟店에서의 不正使用

(1) 序

회원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카드발행회사는 회원에게 분실카드를

165) 이진한, 앞의 논문, 235-236면.

166) 인익수, 앞의 논문, 55-56면.

167) 조성권, 앞의 논문, 73-74면.

168) 오경식, "신용카드위·변조범죄의 실태와 대책", 신용카드 제16호, 1997. 9., 58-64면 ; 최응렬, "신용카드위조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166-175 참조.

신고토록 하여 당해 신용카드의 무효를 가맹점에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가맹점을 카드를 체크하여 불법 영득자에 의한 카드의 이용을 방지하므로 통지를 받은 후에는 신용카드의 불법이용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가맹점은 실제로 물건거래에만 주된 관심이 있어 카드의 유·무효여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카드이용자가 당해 회원인지 또는 서명이 진실한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구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실통지를 받기 이전에는 카드의 불법이용이 간단하여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¹⁶⁹⁾

여기서는 대표적인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타인의 카드를 부정취득한 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가. 大判 1996. 7. 12, 96도1181.

가) 事實關係

피고인은 ① 1995년 11월 2일 09: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갑의 자취방에서 갑이 보관하고 있던 비씨카드를 절취하고 ② 같은 날 10:40경 같은 동에 있는 전자 대리점에서 20인치 칼라텔레비전 1대를 구입하면서 위 비씨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약2시간 20분 동안에 걸쳐 같은 동에 있는 위 비씨카드 가맹점 일곱 곳에서 합계2,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위 비씨카드로 결제하였다.

원심은 신용카드 절취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나) 判決要旨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와 같

169) 인익수, 앞의 논문, 56-57면.

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위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제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달라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 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問題의 所在

위의 판례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가맹점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얻은 행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바, 그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용카드회사에 의해 신용카드 무효통지가 가맹점에 송부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확실히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상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누구를 피해자로 하여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2호에서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항 3호에서는 도난·분실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詐欺罪의 成立與否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 회원의 자격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와 달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데 대하여 대체로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¹⁷⁰⁾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 있고 피기망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가맹점으로 보는 견해와 신용카드회사로 보는 견해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통설과 판례는 가맹점을 기망자로 본다.¹⁷¹⁾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欺罔行爲

신용카드제시행위는 그 제시자와 카드에 기재된 자가 동일 인물이고 카드자체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표시행위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타인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기명의의 것인 양 제시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기망자를 기망 했다고 보는데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다.¹⁷²⁾ 다만 기망의 내용으로서 카드명의인의 동일성 이외에 동 카드의 사용에 대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다.

일본의 경우 신용카드시스템의 특성상 신용카드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제시자의 차후 대금지불의 능력이 있다는 점을 신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카드의 동일성 이외에 대금지불의 의사 및 능력까지 기망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다.¹⁷³⁾ 그러나 통상의 신용카드거래에 있어 가맹점은 카드제시자의 대금지불의 의사나 능력에는 무관심한 것이 관행이고 가맹점규약을 보아도 가맹점을 반드시 카드제시자의 대금지불의 의사나 능력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망의 내용은 카드제시자나 카드의 동일성에 대한 기망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¹⁷⁴⁾

170) 이연규, "신용카드관련범죄에 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제47호,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1998. 12., 123-124면 ; 대판 1997. 1. 21., 96도2715 ; 대판 1996. 7. 12., 96도1181.

171) 노용우, 앞의 논문, 124면.

172) 최광혁, 앞의 논문, 83면.

173) 윤해성, 앞의 논문, 37면.

174) 오경식, "한국과 독일의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159면.

나. 被欺罔者

이처럼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행위 중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의 기망행위 성립은 이를 긍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기망행위의 상대방, 즉 피기망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먼저 가맹점을 피기망자로 보는 입장¹⁷⁵⁾은 통상의 카드거래에 있어 가맹점을 카드제시자의 언행이나 신용카드조회기(Easy Check)를 통한 카드의 동일성 및 유효성 여부만을 확인할 뿐 신용카드에 대한 일반 신분증처럼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명을 통한 확인 역시 실질적인 상거래상 정착되지 않는 관행으로 이를 통해 동일성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카드제시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는 대상은 가맹점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회사를 피기망자로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회원규약에서도 명의인 이외의 자는 카드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명의인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의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거래상 가맹점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확실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그를 위한 카드의 유효성여부만 관심을 갖고 카드제시자의 동일성여부에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가맹점에 대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기망은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 의무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기망자는 신용카드회사라고 한다.¹⁷⁶⁾ 이때 손해는 회원이 입지만 그 회원의 손해는 일정한 보험 등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쳐 보전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다. 被害者

피해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카드회원, 카드회사, 가맹점의 상담사중 제3자에 의해 발생된 부정사용대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와 상호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신용카드 명의인이 피해자라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상 카드명의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그 손해는 카드명의인에게 있고, 가맹점

175) 이러한 견해가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노용우, 앞의 논문, 124-125면 ; 오경식, "한국과 독일의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159-160면 ; 대판 1999. 7. 9., 99도857 ; 197. 1. 21., 96도2715 ; 1996. 7. 12., 96도1181 등 참조.

176) 인익수, 앞의 논문, 59면.

측에서는 카드제시자가 카드명의인이라고 생각되면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맹점은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 된다.¹⁷⁷⁾ 가맹점을 피해자로 보는 입장은 비록 매출표의 송부로 가맹점이 대금의 결제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미 가맹점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되며, 이는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지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전제로 회원에 대한 대금채권의 이행청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¹⁷⁸⁾

한편 신용카드회사를 피해자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착오에 의해 가맹점은 자신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카드회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대금지불청구권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처분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은 가맹점의 상품 또는 용역이지만 가맹점은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지불을 받기 때문에 가맹점이 카드회사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⁷⁹⁾

라. 小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제시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먼저 피기망자에 관해서는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카드 제시자는 “타인명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교부와 용역을 제공을 받으므로 피기망자를 가맹점으로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가맹점을 피해자로 보는 견해는 가맹점이 물품을 제공하면 손해의 발생이 있고, 후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전표상의 대금을 지급 받지만 이는 일종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변제 받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신용거래라는 형태의 다소 위험성을 내포한 거래방식을 승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카드거래의 현실을 보면 가맹점을 카드이용자의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유무를

177) 윤해성, 앞의 논문, 39면.

178) 윤해성, 앞의 논문, 39면.

179) 박성호, 앞의 논문, 73면.

고려할 필요 없이 카드의 유효성과 소지자와 카드 상 명의인과의 동일성 여부만 조사하면 족하고 또 그로써 가맹점은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과 일치될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의한 사기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맹점이 행위자를 고소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없고 모두 신용카드회사가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있는 실태를 보더라도¹⁸⁰⁾ 피해자는 신용카드회사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사기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카드회사 재산상 손해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진정한 카드의 명의인을 보는 견해는 그에게 대금청구가 이루어진 때¹⁸¹⁾라고 보며, 가맹점을 피해자로 보는 학설은 물품의 교부 그 자체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물품의 교부가 이루어진 때¹⁸²⁾라고 본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를 피해자로 보면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제시한 때, 즉 손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생긴 때가 기수시기라고 함이 타당하다.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의한 가맹점에서의 물품구입행위가 어떻게 사기죄를 구성하는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행위자가 제시하는 행위는 그 카드가 타인명의의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이 이에 의하여 카드소지인이 카드명의인으로 오인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착오에 빠진 가맹점이 카드사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처분행위를 하였다. 결국 가맹점의 처분행위에 의해 카드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3) 與信專門金融業法上の 信用卡不正使用罪의 成立與否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은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위조

180) 이연규, 앞의 논문, 124면.

181) 이 견해는 카드회원이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회사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금결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달리 결정하게 되면 기수의 시점도 이에 따라 상이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182) 이 견해는 가맹점이 거래 약정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의 변제를 받게 되므로 가맹점이 재산상이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갈취, 편취, 횡령 등 다른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법에서 규정하는 “도난” 과 “사용” 의 의미와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를 가리키는지가 중요하다.

가. “盜難” 의 意味

동조의 “도난”이라는 개념을 “절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것인지 혹은 “강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도난”이라는 개념의 문리해석상 “절도”뿐만 아니라 강취나 절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강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⁸³⁾ 판례도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¹⁸⁴⁾ 또한 판례¹⁸⁵⁾ 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 한다” 고 하여 사용절도도 “도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난”에는 사기와 공갈을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갈취, 사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使用” 의 의미

신용카드의 부정취득 후 이를 사용하는 과정은 점원에 대한 카드제시, 카드의 유효성에 대한 확인절차, 매출전표작성, 서명란의 서명, 교부행위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용은 어느 범위까지를 지칭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183) 노용우, 앞의 논문, 127면 ; 임양운, 앞의 논문, 184면 ; 최광혁, 앞의 논문, 86면.

184) 대판 1997. 1. 21., 96도2715 ; 대판 1998. 2. 27., 97도2974.

185) 대판 1999. 7. 9., 99도857.

판례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86)라고 하여 신용카드제시외에 매출전표의 서명과 교부행위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87) 그 근거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단순히 “제시”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용”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법정형의 형기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보다 높아 별도의 처벌이 필요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188)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주체는 당해 신용카드를 위조, 절취, 유실물 횡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부정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與信專門金融業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다.189)

(4) 私文書偽造 및 同行使罪의 成立與否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190)

그러나 이들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판례191)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사용이라 함을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186) 대판 1993. 11. 23., 93도604.

187) 다시 말해 판례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를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마친 때’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임양운, 앞의 논문, 184면.

188) 유명상, 앞의 논문, 115면.

189) 인익수, 앞의 논문, 64면.

190)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 269면.

191) 대판 1992. 6. 9., 92도77 ; 대판 1993. 11. 23., 93도604.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전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일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2) 現金自動引出機에서의 不正使用

(1) 序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이용하는 유형은 이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현금대부)와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예금인출)로 나눌 수 있다.¹⁹²⁾ 왜냐하면 預金去來計座番號와 秘密番號에 관한 정보가 입력된 현금카드의 발행과 그 사용에 따른 업무는 순전히 은행의 예금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의 업무범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비록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가 다같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항목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자는 예금거래에 따른 업무이고 후자는 신용카드업자의 자금유통업무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³⁾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대체로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판례의 입장을 먼저 검토하여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죄책을 중심으로 논하고,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92) 이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이 단순히 예금인출인 경우에는 자신의 예금 잔고에서 가져간 것이므로 형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될 수 있다.

193) 정용석, 앞의 논문, 99면.

가. 大判 1998. 2. 27, 97도2974

가) 事實關係

피고인은 ① 1997. 3. 25. 08:5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업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강취한 상업은행 마스터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20,000원을 인출하고 ② 같은 날 09:10경 같은 동 소재 지하철신사역 구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한미은행 비자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2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23경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 신사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한미은행 비자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함과 아울러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判決要旨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不正使用이라 함은 僞造·變造 또는 盜難·紛失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신용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신용카드를 인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기능은 법 제6조 제2항, 구 신용카드법시행령 제5조 제3호, 제6호의 규정 등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구 신용카드업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가한 부대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신용카드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나. 問題의 所在

위 판례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형사책임에 대한 것으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부정사용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란 점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竊盜罪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興信專門金融業法上의 不正使用罪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 검토되어야 할 논점은 권한 없는 자가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금자동인출기 내지 그 관리자를 기망한 현금취득인가 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현금취득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부정 취득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현행법상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詐欺罪·竊盜罪의 成立與否

가. 詐欺罪說

사기죄설에 의하면, 현금자동인출기는 그 설치자가 정당한 이용자로 하여금 유효·동일한 카드로 이용할 것을 믿고 이를 사용케 하는 것으로, 만약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한 자의 신뢰를 침해하게 된다고 한다.¹⁹⁴⁾ 또한 신용카드거래에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금전채권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일정한도의 현금서비스, 즉 신용공여의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용공여의 범위는 카드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시 신용도에 따라 미리 포괄적으로 정하여지며, 신용공여의 한도 내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현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신용공여가 단지 기계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 가맹점과 가입자 및 신용카드 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약정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¹⁹⁵⁾

이는 비록 사람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과 카드회사를 현금인출기 이용자나 가맹점에서 거래한 자가 카드회원임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賣出

194) 윤해성, 앞의 논문, 60면 ; 임양운, 앞의 논문, 175면.

195) 조준현,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사기·절도의 경합", 고시계, 2000. 5., 136면.

代金の 信用提供이나 一般信用供與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적인 처분행위가 있음을 기회로 타인카드의 부정사용자는 제1차적으로 가맹점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제2차적으로는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상품을 제공받고 나아가 신용공여까지 포함하여 현금인출을 하였다고 보아 사기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¹⁹⁶⁾

요컨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의 지배를 이전하는 행위는 신용카드회사나 제휴은행 또는 현금자동인출기관리자를 기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카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契約書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일정한 信用供與나 物品代金債務引受의 의사 표시된 취지에 반하여 신용카드회사가 신용공여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包括的인 事前處分行爲를 부당하게 활용한 것이므로 欺罔行爲로 볼 수 있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竊盜罪說

절도죄설은 판례¹⁹⁷⁾ 및 다수학자들이 동조하고 있는 견해¹⁹⁸⁾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현금자동인출기라는 기계의 작동 법에 따라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카드회사나 그의 제휴은행 또는 현금자동인출기관리자의 관리, 즉 점유하는 물건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이므로 竊盜罪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한 자의 의사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타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즉 은행의 현금카드 이용규약에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여 정당하지 않은 소지인에 대하여도 비밀번호만 일치하여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¹⁹⁹⁾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²⁰⁰⁾ 요컨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

196) 조준현, 위의 논문, 136면.

197) 대판 1995. 7. 28., 95도997 ; 대판 1998. 2. 27., 97도2974.

198) 이재상, "공범과 착오, 공무원계의 이탈, 신용카드 부정사용자의 죄책, 합동범의 공동정범", 고시계, 1999. 5., 52-53면 ; 이진한, 앞의 논문, 247면 ; 정용석, 앞의 논문, 99면.

199) 강동범, "절취한 현금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76면.

200) 박성호, 앞의 논문, 81면.

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그 이용자의 欺罔行爲에 의해 피해자가 誤信함으로써 현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자동인출기의 현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자동인출기의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긴 것으로 竊盜罪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를 형식적으로만 보면 절도죄를 인정 할 수 있으나, 편취하거나 절취한 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이미 사고신고가 이루어진 카드라면 현금서비스기능을 달성할 수 없는데 이때의 현금자동인출기의 부작동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²⁰¹⁾가 제기된다는 비판이 있다.

다. 無罪說

무죄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현금자동인출기의 관리자는 카드소지 여부와 그 카드에 속하는 비밀번호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기계 장치를 조작하여 不正使用을 방지하고 있는데,²⁰²⁾ 이는 현금자동인출기의 관리자가 현금자동인출기의 지시에 따라 기계를 조작하는 자에게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意思表示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²⁰³⁾ 즉 현금자동인출기는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소지자가 요구한 현금서비스를 내주도록 은행이 미리 기계조작을 하여 놓은 것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자동인출기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현금자동인출기의 동의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現金自動引出機가 조작, 작동 될 때 은행 또는 카드회사가 실제로 현금의 점유 내지 소유권이전의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권자에게만 점유를 이전하겠다는

201) 이러한 경우 당연히 하자있는 처분, 즉 현금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원래 카드론 계약의 내용의 실현이며 이를 단순히 기계적 작동불능이라는 물인간적 표현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한다. 조준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형법적 의의", 149-150면.

202) 윤해성, 앞의 논문, 61면.

203) 카드의 비밀번호 소지자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입력한 현금의 액수를 현금자동인출기의 현금인출구를 열어 교부하는 것은 조건 없는 점유이전의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박주환, 앞의 논문, 46면.

‘條件附 移轉意思’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²⁰⁴⁾ 따라서 절도죄에 있어서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이전’은 없는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사기는 기망의 대상으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詐欺罪로도 의율할 수 없다고 한다.²⁰⁵⁾

라. 小結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판례²⁰⁶⁾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은 것”으로 구성하고 있어,²⁰⁷⁾ 竊盜罪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他人”이란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를 의미하고, “財物”이란 현금을 말한다. “竊取”란 곧 현금자동지급기의 지배를 배제하여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은 것이며, 마지막으로 ‘不法領得’이란 현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²⁰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²⁰⁹⁾ 신용카드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카드발행 은행은 카드회원과 카드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카드명의인에 대하여 계약상 정해진 처분범위 안에서 점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용카드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은행)의 점유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

204) 정용성, 앞의 논문, 97-98면 ; 하태훈, 앞의 논문, 331면.

205) 박주환, 앞의 논문, 46-47면.

206) 대판 1995. 7. 28., 95도997.

207) 박성호, 앞의 논문, 81면.

208) 박성호, 위의 논문, 81면.

209) 제4장 제1절 4.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부정사용행위 참조.

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竊盜罪에서 의미하는 占有排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절취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금자동인출기라는 기계에 대한 기망이나 착오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3) 기타 財産 및 經濟犯罪의 成立與否

가. 橫領·占有離脫物橫領, 背任罪의 成立與否

먼저 형법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 횡령죄의 영득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법원의 판례(BGHSt 35, 152)는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인출에 의해 현금에 대한 점유는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아직도 관리자인 은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²¹⁰⁾고 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부정사용은 독일형법 제246조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²¹¹⁾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독일과는 다른 財産犯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형법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의 횡령죄에서는 그 점유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橫領하거나 返還을 拒否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 그 본질은 이러한 위탁관계에 기한 信任關係의 破壞에 있다. 판례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²¹²⁾ 여기서의 委託은 반드시 소유자의 委託行爲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²¹³⁾ 이렇게 볼 때 횡령행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절취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위자가 범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은 재물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210) 왜냐하면 점유배제는 하나의 사실적 과정이나, 소유권양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211) 최광혁, 앞의 논문, 90면.

212) 대판 1983. 6. 28., 80도1372 ; 대판 1994. 9. 23., 93도919 ; 대판 1994. 11. 25., 93도2404.

213) 대판 1985. 9. 10., 84도2644 ; 이 판결을 위탁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위탁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강동범, 위의 논문, 75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취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기는 하나 신임관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²¹⁴⁾ 따라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占有離脫物橫領은 위탁관계없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영득하는 것인데, 타인명의 신용카드일지라도 그 카드 자체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받은 현금서비스는 유효한 점유이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해석되므로 占有離脫物橫領罪도 성립하지 않는다.²¹⁵⁾

한편 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바,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背任罪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의 成立與否

은행계좌간의 자동이체나 예금지급, 잔액조회, 현금서비스 업무 등을 처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는 금융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情報處理裝置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는 2001년 12월29일에 법률의 개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에 본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야 하였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와 같이 진실한 데이터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유형, 즉 자기의 신용카드를 투입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개정 전 형법은 ‘허위의 명령’과 ‘부정한 명령’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자동인출기의 부정사용에 대해서조차 논란의 여지가 많

214) 최광혁, 위의 논문, 90면.

215) 조성권, 위의 논문, 80면.

있다. 이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여 많은 부분이 해소 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의 이익만 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현금자동인출기에 신용카드를 투입 조작하여 행위자가 취득하는 것은 재물인 현금이므로 역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만 성립한다.²¹⁶⁾

다. 與信專門金融業法上の 신용카드 不正使用罪의 成立與否

타인의 신용카드(여기서는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與信專門金融業法 제70조 제1항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였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신용카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법 제70조 제1항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여신금융업법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의 취득행위가 절취·습득 등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부정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형법의 일반이론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不正使用이란 분실 또는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의 本來的 用法²¹⁷⁾이나 附加的 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동법 제2조 제2호 참조)과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附帶業務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바(동법 제12조), 제13조는 그 부대업무의 하나로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을 열거하고 있다.²¹⁸⁾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신용카드의 본래적 용법에 따른 사용은 아니지만 그 부가적 용법에 따라 신용카드의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볼

216) 대판 2002. 7. 12., 2002도2134.

217) 신용카드의 본래적 용법이란 물품의 구입과 용역의 제공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3호 참조).

218) 이연규, 앞의 논문, 128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 신용카드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수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²¹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²²⁰⁾에서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신용카드의 본래적 용도인 代金決濟의 手段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 하였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신용카드의 본래적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본 것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신용카드의 現金카드의 預金引出

오늘날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현금카드의 預金引出機能을 가지고 있는바,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예금구좌로부터 단순히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이를 긍정하는 견해²²¹⁾는 통상 은행이 자기의 은행에 예금거래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 그 신용카드에 위 신용카드의 기능과 현금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카드약관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인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예컨대 비씨카드회원약관 제8조 제1항) 양자를 구별할 필요 없이 與信專門金融業法上の 不正使用罪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첫째,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행위는 일반통념상 신용카드의 고유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단지 신용카드회사의 업무영역으로 규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둘째, 은행계 신용카드를 본래의 용도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둘째, 은행계 신용카

219) 법 제70조 제1항 3호에 해당하게 된다.

220) 대판 1995. 7. 28., 95도 997.

221) 김성환, 앞의 논문, 86면 ; 정용석, 앞의 논문, 100면.

드를 발급하는 회사에서 신용카드에 현금카드의 기능을 모두 흡수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행위는 카드회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를 기본용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셋째,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행위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행위인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와 형량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이를 부정하는 견해²²²⁾에 따르면 하나의 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가 우연히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겸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기능이 물체적으로 하나의 카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단순히 현금인출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소정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한다.

생각건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과 단순히 예금의 인출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기능과 현금카드의 기능을 혼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신용카드의 용도에 따라 “신용카드의 기능”을 사용한 것이지만,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기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카드의 기능”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온라인현금자동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신용카드업법 제 25조 제1항 소정의 不正使用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²²³⁾하여 현

222) 노용우, 앞의 논문, 146면 ; 이연규, 앞의 논문, 131면 ; 조준현,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사기·절도의 경합”, 137면.

223) 대판 1998. 2. 27., 97도2974.

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4. 罪數關係

1) 詐欺罪와 신용카드 不正使用罪間의 關係

타인의 신용카드를 不正取得(위조·변조·절취·습득)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도 해당하므로 양자의 罪數關係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實體的 競合說과 想像的 競合說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實體的 競合說

이는 양죄가 保護法益과 行爲態樣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견해고 그 근거는 다음²²⁴⁾과 같다. 먼저 보호법익을 보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의 신뢰(사회적 법익)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서로 구별된다고 한다. 또 行爲의 態樣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만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때에 부정사용자가 신용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는지, 가맹점이 이에 기망 당하였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기는 가맹점에 대한 기망과 이에 착오를 일으킨 가맹점의 처분행위, 즉 물품의 교부를 행위태양으로 하므로 구성요건의 관점에서는 서로 구별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에는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는 私文書偽造 및 同行使罪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행위가 그로 인한

224) 유남석,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수-대상판결 : 대판 1996. 7. 12., 96도1181", 판례월보 제314호, 1996. 11., 42-43면.

사기와 想像的 競合의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²²⁵⁾

대법원도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신용카드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 점주를 속이고 물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實體的 競合關係에 있다고 판시²²⁶⁾하였다.

(2) 想像的 競合說

이에 대하여 想像的 競合說²²⁷⁾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2차적으로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을 보호하기 때문에 與信專門金融業法上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고 만은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정사용행위는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 등의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단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또는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였다는 것으로 바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므로 재산의 침해를 요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이가 있다는 점과 양자는 형량에도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兩罪는 想像的 競合에 해당한다고 한다.

(3) 小結

생각건대 형법상 詐欺罪와 與信專門金融業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想像的 競合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인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의 건전한 유통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사기죄는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재산상의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곧 기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죄는 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고 매

225) 최광혁, 앞의 논문, 103면.

226) 대판 1997. 1. 21., 96도 2715.

227) 김영환, "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한 형법해석론의 난점", 316면 ; 박성호, 앞의 논문, 76-77면.

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 竊取한 信用卡으로 現金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罪數關係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해서도 想像的 競合이 된다는 견해와 實體的 競合이 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현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부정 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은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의 관계는 그 保護法益이나 行爲態樣이 전혀 달라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²²⁸⁾하여 實體的 競合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현금서비스 금액을 입력하여 현금 입출구에 교부된 현금을 취득하는 일련의 행위는 한 개의 행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실현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想像的 競合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228) 대판 1995. 7. 28., 95도 997.

第 5 章 信用卡犯罪에 대한 立法論

우리나라는 일반형법에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1997년 8월 28일 구 신용카드업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된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제정이 추진되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예금 등 수신을 취급하지 않고 여신업무만을 영위하는 소위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서 여신전문²²⁹⁾, 신용카드범죄들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있어 거래현실을 규제하기에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는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²³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위조·변조·절취·습득 이외의 방법 등(예를 들면 사취·갈취·횡령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와 支拂意思와 能力 없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현금자동인출기와 관련된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법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형법규정과 법정형의 차이를 보이는 등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현행 與信專門金融業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29) 한상곤, 앞의 논문, 98면.

230) 김종길, 앞의 논문, 111면.

第1節 處罰規定의 新設 내지 補完

1. 信用卡 僞·變造罪의 整備

1) 信用卡不正使用罪와의 分離

與信專門金融業法 제70조 제1항은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신용카드의 위조·변조·위조·변조·도난·분실된 신용카드의 판매·사용을 하나의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라고 경시할 수도 있으나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와 행사행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기 때문에²³¹⁾ 신용카드의 위조·변조와 위조·변조·도난·분실된 신용카드의 판매·사용을 각각 분리하여 별개의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信用卡 僞造·變造罪의 ·陰謀 處罰規定의 新設

私文書의 일종인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행위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與信專門金融業法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형법은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형법 제235조, 제231조, 제232조 의 2), 신용카드와 유사한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통화에 의한 죄” 등에 모두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僞造·變造罪의 未遂犯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²³²⁾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에 미수범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로써 종래 제기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은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

231) 김승호, 앞의 논문, 69면.

232) 김현희, “신용카드업법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8, 87면.

도 중요한 보호법익의 경우보다 앞선 단계에서 그 준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들 필요가 있다.²³³⁾ 그리하여 형법은 몇몇 범죄에 대하여는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도 豫備·陰謀를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13조, 제224조) 신용카드는 통화나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경제거래에서는 통화나 유가증권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현금·수표에 이은 제3의 통화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경제유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²³⁴⁾ 그 성질이 비록 사문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통화범죄나 유가증권범죄처럼 신용카드 위·변조죄에도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오늘날 신용카드의 위·변조행위가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豫備·陰謀段階에서 처벌할 刑事政策的 必要性이 인정된다.²³⁵⁾

2. 信用卡不正使用罪의 客體의 整備

1) 自己名義 信用卡濫用行爲에 대한 處罰規定의 新說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회원에 의한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대처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支拂意思와 能力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했다고 하여 詐欺罪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관례와 실무의 태도이다.²³⁶⁾ 이러한 이론구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 또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與信專門金融業法에는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 이는 立法의 欠缺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²³⁷⁾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233) 김승호, 위의 논문, 70면.

234) 최광혁, 앞의 논문, 111면.

235) 김승호, 앞의 논문, 70면.

236) 김종덕,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小考", 고시계, 2003. 12., 80-82면.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不正使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남용한 행위를 민사법적 측면에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를 과연 형사범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입법화하더라도 대금지급의 의사 내지 능력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입법 자체가 또 다른 불합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신중한 입법을 기해야 한다.²³⁸⁾

2) 他人名義 信用卡의 不正使用에 대한 取得原因의 補完

여신전문금융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절취·강취·점유물이탈횡령, 위조·변조한 카드 외에 갈취, 편취 또는 횡령한 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갈취·편취 또는 횡령한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 부득이 하게 일반형법상의 해당 죄책과 아울러 私文書(신용카드)不正行使, 私文書(매출표)僞造·同行使, 詐欺罪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법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²³⁹⁾

생각건대 갈취, 편취 또는 횡령 등의 기타 방법으로 不法領得하는 경우도 포괄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법 제 70조 제1항의 부정 사용죄의 객체에 “갈취·편취·횡령” 한 타인카드를 추가하거나²⁴⁰⁾ “부정 취득한 타인카드” 로 개정하는 것²⁴¹⁾이 좋을 것이다.

237) 독일형법 제266조 b (수표 및 신용카드의 남용).

① 수표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발급에 의하여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을 남용하여 발행인으로 하여금 사용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이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8조의 (사소한 가치의 物에 대한 절도와 횡령)는 이를 준용한다.

238) 김현희, 앞의 논문, 88면.

239) 홍영규, “신용카드관련범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77면.

240) 김승호, 앞의 논문, 68면.

241) 김현희, 앞의 논문, 89면 ; 최광혁, 앞의 논문, 110면.

3. 其他

1) 現金自動引出機와 관련된 規定의 整備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견해가 복잡하게 나뉘고 있다. 따라서 통일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현금자동인출기의 부정사용과 가장 가까운 구성요건을 가진 컴퓨터사용사기죄를 개정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86년 제2차 經濟犯罪對策法에 의해 독일형법 제263조의 a에 규정된 컴퓨터사기죄 속에는 “정보(데이터)의 부정사용”(Unbefugte Verwendung von Daten)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금자동인출기를 부정사용한 경우를 규율할 수 있다²⁴²⁾고 규정하고 있다.

2) 賣出傳票 讓渡 · 讓受行爲의 處罰規定의 補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한다²⁴³⁾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란 정상적인 카드거래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란 정상적인 카드거래에 의한 매출전표를 의미한다²⁴⁴⁾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장 매출전표, 초과매출전표, 타인명의 매출전표 또는 가맹점을 기재하지 않는 매출전표의 讓渡 · 讓受行爲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²⁴⁵⁾

242) 박성호, 앞의 논문, 92면.

243) 김승호, 앞의 논문, 69면.

244) 대판 1996. 5. 31., 96도449.

3) 신용카드의 定義 規定의 補完

우리나라 법률상 신용카드의 개념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을 말한다고 하여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를 ‘물품의 구입과 용역의 제공’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단순히 판매신용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금융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용하는 기능도 가져야 하는 것이다.²⁴⁶⁾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를 판매신용의 기능뿐 아니라 소비자금융의 기능을 포함을 개념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第2節 法定刑의 再整備

1. 신용카드 僞·變造行爲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가 현금 또는 수표에 이어 제3의 통화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경제유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질이 비록 사문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위조, 변조한 경우 형법상의 통화위조죄 내지는 有價證券僞造罪의 법정형²⁴⁷⁾과 균형을 맞추어 그 장기를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²⁴⁸⁾

245)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제도적 대책”, 31-32면.

246) 김성철, “신용카드관련법제 개선방안”, 법제 제509호, 2000. 5., 12면.

247) 통화위조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며, 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248) 김준찬, “신용카드범죄유형 및 방지대책에 대한 고찰-신용카드업법 중범죄부분-”, 신용카드 제9호, 1995. 12., 64-65면 ; 박주환, 앞의 논문, 118-119면 ; 인익수, 앞의 논문, 119-120면.

2. 詐欺罪와 신용카드不正使用罪

타인의 신용카드를 不正取得(위조, 변조, 절취,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詐欺罪와 與信專門金融業法上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되므로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판례²⁴⁹⁾는 양죄의 관계를 實體的 競合關係로 보고 있으나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保護法益과 構成要件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想像的 競合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는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想像的 競合關係로 볼 경우 법정형이 중한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이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²⁵⁰⁾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70조 제1항의 법정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의 관계를 一般法과 特別法의 관계로 인정하는 견해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법정책상 일반법으로 규율하기보다는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나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의 징역은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형법상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特別法의 형량이 오히려 일반법의 형량보다 가벼워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²⁵¹⁾

3. 虛偽賣出傳票 作成과 私文書偽造罪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할 경우(동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및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동법 제70조 제3항 제3호), 비록 法條競合理論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여신전문금

249) 대판 1997. 1. 21., 96도2715.

250) 천종철,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그 대처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2호, 서원대학교, 1999, 332면.

251) 김종길, 앞의 논문, 114면.

용업법에서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²⁵²⁾ 하지만 이는 형법상의 私文書偽造罪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경한 처벌이어서 위 범죄들의 위험성에 비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²⁵³⁾ 따라서 동법 제70조 제2항 제3호와 제3항 제3호의 법정형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과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52) 김종길, 앞의 논문, 113-114면 ; 김현희, 앞의 논문, 89-90면 ; 인익수, 앞의 논문, 120면.
253) 박주환, 앞의 논문, 119면.

第 6 章 結 論

신용카드는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고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신용카드범죄는 신용카드이용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사업자의 증가와 함께 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회원유치경쟁으로 인한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의 발급, 가맹점의 신용카드회원의 신분확인의 소홀,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 등 신용카드거래의 구조적인 허점으로 신용카드의 이용횟수가 날로 증가하여 새로운 제도에 따르는 부작용 즉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 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범죄는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형사법적 제문제와 그 법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범죄 중 가장 범죄율이 높고 문제시되는 신용카드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명의신용카드의 부정취득·사용행위와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사용으로 나누었다.

신용카드범죄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조직적인 범행이 많으며 범행지역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현행 형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벌칙규정은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있어 거래현실을 규제하기에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는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점들을 보완하여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카드회사 스스로 不正發給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교육과 감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②카드회사 직원이 부적격자에게 부정하게 카드를 발행한 경우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未遂犯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신용카드의 不正使用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은 與信專門金融業法 제19조에

규정된 身元確認義務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용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매입을 거절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위조하기 어려운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신용카드 도입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④매출전표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점에서의 매출전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심사하여 매출전표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에 관하여 ①신용카드위·변조죄를 정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분리하고 豫備·陰謀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객체에 자기명의신용카드 남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타인명의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취득원인(사기·갈취·횡령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현금자동인출기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매출전표의 讓渡·讓受行爲의 처벌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신용카드범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첨단범죄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專門搜查·研究機關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는 벌칙규정의 정비와 더불어 신용카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범죄와 같은 경제범죄를 분석함에 있어서 형법의 기본원칙인 罪刑法定主義,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補充性的 原則, 責任原則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經濟刑罰法規의 特別構成要件을 일반 형법전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물론이고 각 분야에서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I. 國內文獻

1. 單行本

- *김순태 · 이창호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 *김일수 · 서보학 공저, 「(새로쓴)형법각론」, 박영사, 2003.
-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8.
「형법각론」, 홍문사, 2003.
- *손동권, 「판례평석」, 1999.
- *오경식,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형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유제호, 「신용사회에서의 신용카드(Credit Card)범죄와 대책」, 시대공론사, 2000.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 *이형국, 「형법각론연구 I」, 법문사, 1997.
- *임 용, 「형법각론」, 법문사, 2003.
- *정성근 · 박광민 공저, 「형법각론」, 삼지원, 2002.
- *정찬형, 「상법강의(하)」, 법지사, 2000.
- *진개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3.
- *한국판례연구원 편, 「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청림출판, 1999.
- *한상문, 「신용카드법 입문」, 정법사, 1993.

2. 論文

-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22권, 1995.

7. 「절취한 현금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고시계, 1996. 9.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제도적 대책」, 논문집 제30호, 서울시립대학교, 1996. 12.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제5호, 1997.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 2466판결)」, 고시계, 1997. 12.
- *강동범 외, 「향후 신종범죄 추세전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5호, 1999. 8.
- *강명수,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1997.
- *강영호,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법조 제479호, 1996. 8.
국가안전기획부 국제범죄정보센터, 「신용카드범죄, 어디까지 왔나 : 첨단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신용카드범죄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본다」, SECURITY WORLD 제24호, 1999. 1.
- *김경태, 「신용카드거래의 법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석사), 1998.
- *김대원,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제20기 사법연수생논문집, 사법연수원, 1991.
- *김문환, 「크레디트카드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박사), 1989. 「판례로 본 크레디트카드범죄(상)」, 판례월보 제212호, 1988. 5. 「판례로 본 크레디트카드범죄(하)」, 판례월보 제213호, 1988. 6.
- *김석환,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최근판례연구 :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형평과 정의 제11호, 1996. 12.
- *김성천, 「신용카드관련법제 개선방안」, 법제 제509호, 2000. 5.
- *김성환, 「컴퓨터사용사기죄에 관한 고찰 :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고찰을 포함하여」, 경제기술법연구 제1호, 관동대학교, 1999. 6.
- *김승호,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1999.
- *김영대,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검찰 제107호, 1996. 6.
- *김영환, 「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한 형법해석론의 난점」, 형사판례연구(3), 1995. 「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신용카드」 제11호, 1996. 6.

-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제6호, 1998.
- *김우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형사판례연구3, 1995.
- *김종길,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 성격, 유형 및 대응방안」, 인하대 행정대학원(석사), 1998.
- *김종덕, 「신용카드 범죄에 관한 소고」, 고시계, 2003. 12.
- *김준찬, 「신용카드범죄 유형 및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업법 중 범죄 구분」, 신용카드 제9호, 1995. 12.
- *김지혜,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인제대학교 대학원(석사), 1998.
- *김형렬,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1989.
- *노용우, 「신용카드범죄의 법적 문제점」, 법률행정논총 제18호,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1998. 12.
- *문남주, 「신용카드범죄의 형사적 제재와 대책」, 원광대학교 대학원(석사), 1999.
- *박병찬, 「신용카드회원이 유효하게 발급받은 자신의 카드를 남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법률논집 제15호, 공군, 1996. 5.
- *박성호,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1999.
- *박주환,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형사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2000.
- *박창식,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석사), 1996.
- *성수임,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 2000.
- *소재룡, 「크레디트카드범죄와 형사법」,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1994.
- *손동권,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의 유형별 범죄성립과 죄수」, 형사판례연구 제7호, 1999.
- *신승용, 「신용카드에 관한 법률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 1998.
- *신종석,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무제에 관한 연구 - 부정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배화논총제19, 2000.
- *안권섭,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1995.
- *오경식, 「신용카드위조·변조범죄의 실태와 대책」, 신용카드 제16호, 1997. 9

- 「한국과 독일의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형사정책 제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8.
- *유남석,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유형」, 법률논집제17호, 공군 1998. 11.
- *윤해성,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2001.
- *이민규,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부담귀속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석사), 1999.
- *이부훈, 「신용카드법리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박사), 1995.
- *이상돈, 「자기신용카드의 위협분배와 형법정책 : 자기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사용의 범죄화 정책에 대한 비판」, 형사정책연구 제4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6.
- *이요섭, 「신용카드부정사용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 제7호, 1995. 6.
- *이승채,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부담」, 법학논총 제3호,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1997. 6.
- *이연규, 「신용카드관련범죄에 관한 동향」, 법학연구 제47호,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1998. 12
- *이재상, 「공범과 착오, 공모관계의 이탈, 신용카드부정사용자의 죄책합동범의 공동정범」, 고시계, 1999. 5.
- 「불법영득의 의사와 크레디트카드사기」, 고시계, 1994. 6.
- 「현금카드의 사용절도와 부정사용」, 고시계, 1996. 11.
- *이종갑,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8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1999. 2.
- *이진한, 「신용카드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 및 그 대책」, 검찰 제108호, 1997. 12.
- *이형국, 「한국에 있어서의 신종범죄와 그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연구 제4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9.
- *인익수, 「신용카드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임양운, 「신용카드범죄의 실무상 문제」, 저스티스 제29권 제3호, 1996. 12.
- *장영민,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형사정

- 책연구원, 1993.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상)」, 고시연구, 1997.
5.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남용행위의 죄책」, 법학논집 제2권 제1호,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5.
- *정전배, 「신용카드범죄실태 및 효율적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 제7호, 1997. 8.
- *정용석, 「형법상신용카드범죄」, 법학연구 제5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1998. 11.
- *정종태, 「미국카드사의 신용카드 사기 방지 대책」, 월간금융 제508호, 1996. 7.
- *조성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1.
- *조준현, 「신용카드부정사기죄의 형법적 의의」, 고시계 1999.
-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사기·절도의 경합」, 고시계 1999. 2.
- *천종철, 「신용카드 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 *최광혁, 「신용카드 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 *최병록, 「신용카드범죄의 형사규제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 제6호, 1995. 3.
-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호, 1994.
8.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호, 1993. 3. 「신용카드 위조범죄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1999. 10.
- *최태형, 「신용카드이용범죄의 유형 및 그 형사적 책임」, 사법연수생논문집(제22기)」, 사법연수원, 1993.
- *하태훈,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형사판례연구 제4호, 1996.
- *Hans Lilie (이용식 역),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처리」, 한독법학 제12호, 1996.
- *한상근,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 *허일태, 「결제능력 없이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로 현금인출한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저스티스, 1996. 9.
- *홍영규,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6.

3. Internet Site

- *<http://www.ccourt.go.kr/>
- *<http://www.court Auction.go.kr/>
- *<http://www.hitel.net/ENGBUG/law/bohobub.htm>.
- *<http://www.geocities.com/Eureka/5777/link302.html>.
- *<http://www.klac.or.kr/>
- *<http://www.koreanbar.or.kr/>
- *<http://www.metro.seoul.kr/>
- *<http://www.moj.go.kr/index.php>.
- *<http://www.nanet.go.kr/>
- *<http://www.nl.go.kr/>
- *<http://www.sagaechu.go.kr/>
- *<http://www.scourt.go.kr/>
- *<http://www.sppo.go.kr/index.shtml>.



II. 外國文獻

1. 日本文獻

- *吉田敏雄, 「クレジットカードの不正使用」, 刑事判例百選Ⅱ 各論(第4版), 有斐閣, 1997.
- *福田 平, 「刑法各論」, 1997.
- *松本恒雄, “インター-のネット上での取引と法,” 法律時報, Vol.69, No.7, 1997. 6
- *神山敏雄, 經濟犯罪の研究, 成文堂, 1991.
- *安理全勝, 他人名義クレジットカードの不正使用と詐欺罪, 法學論集(山利學院大學), 1992. 20號
- *岩村修二, 各種カードの不正使用, 刑事裁判實務大系 8, 1996.

*日本全國防犯協會聯合會 「クレジットカードやヤユリテイに関する研究報告書」
クレジットカードやヤユリテイ研究委員會 1996. 3.

2. 歐美文獻

*Dreher/Trondle, Strafgesetzbuch und Nengesetz 47.Aufl.,266b Rn.2:Lackner,
「StGB 21.Aufl.」,266b Rn. 1, 1994.

*Druey, Information Gegenstand des Rechts, 1995.

*Keith, Slotter, "Plastic Payments Frauds in Credit Card Fraud",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1997. 6.

*Karl, L ackner, Strafgesetzbuch, Kommentar, 21. Aufl. 1994.

*Schanke/Schröder, Strafgesetzbuch, Kommentar, 24. Aufl., 1991.

*Solomon, E. H., Virtual Mone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Stratenwerth, Zukunftssicherung durch den Mitteln des Strafrechts? ZStW 1993.



- ABSTRACT -

A Study on the Credit Card Crime

Ko, Seong-gwa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oo-Gil

In the 21st century, most of us carry one or two credit cards, which are considered living necessities. These cards are being used for various purposes according to their uses. Those who possess these cards can conveniently purchase products without cash and use cash service. In this respect, credit cards are being settled down as an important and essential means of living for us. With all these benefits, credit cards are increasingly being abused as a means of crime. These crimes are aggravating the whole country's economy. The increase of credit card crimes are attributable to loopholes in the system and management of credit cards such as the credit card companies' reckless issuing of credit cards, careless checking of identif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Legal judgement on these transactions are not yet clearly defined and established. So new legislation are being required.

There are two categories about credit cards crimes. One i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credit cards such as illegal pursuit of profits, illegal acquisition

and forgeries of others' credit cards. The other is related to the illegal use of credit cards for financial profits such as illegal use of credit cards and false record of sales slips. Credit card crimes can be categorized into credit card crimes on one's own names and credit cards crimes on others' names. In case of credit card crimes on one's own names, the punishment for fraud is applied in criminal laws and loan specialized financial laws, which is still a question whether it is legally proper or not. And it is still on the question when is the exact time of completing the crime in case of acquisition of credit cards. Therefore The author categorized the credit card crimes into crim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credit cards, crimes related to credit and crimes related to disposition.

I also examined the credit card crimes committed by member credit card branches. These crimes are mainly related to recording sales slips. I also referred to preventive measures. We still don't have the punishment regulations on extorting, swindling and embezzling credit cards, I suggest some solutions.

If loan specialized financial laws are the special criminal laws, we should create new laws to narrow the gaps between criminal laws and special laws to protect victims by establishing clearer regulations on credit card crim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ing and extending responsibility on credit card companies and member branches. If the credit card companies recklessly issue credit cards to delinquent members, the responsibility surely falls on the companies. If the society of credit is to be deep-rooted, it should be possible to lead a convenient life on credit. That's the reason we need clear regulations to deal with credit card crimes.

In conclusion, it would bring about more effective achievements to improve punishment regulations on illegal acts of credit cards and seek measur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redit card system. Discussion on legal problems about illegal use of credit cards should continue and studies on illegal use of credit cards in many fields should be deeply conducted.

